

미국의 육아정책 (II)

| 조은경·김은영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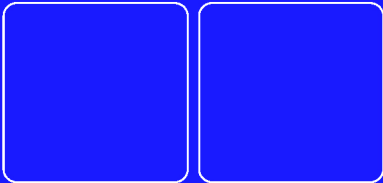


미국의 육아정책(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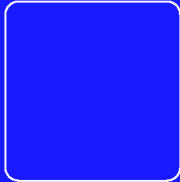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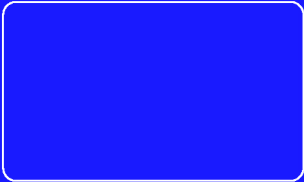
■ 조은경, 김은영

미국의 육아정책 (II)

조은경·김은영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육아정책연구소의 '세계육아정책동향' 시리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시리즈는 2006년 일본과 스웨덴을 시작으로 2020년 노르웨이(Ⅱ)편에 이르는 다양한 국가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미국의 육아정책(Ⅱ)'는 2008년에 Ⅰ편을 발간한 이래 13년 만에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발간물이 다양한 내용을 담아 미국의 전반적인 육아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면, 이번 시리즈에서는 사회 변화 속에서 미국 육아정책의 가장 최신의 정보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연방법 테두리 안에서 주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요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주로 연방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되 특징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 예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미국의 육아정책을 소개했던 2008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육아정책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나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정책과 사례는 늘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육아정책보다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유아나 다문화아동들을 위한 정책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분야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미국의 육아정책' 동향과 시사점이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세부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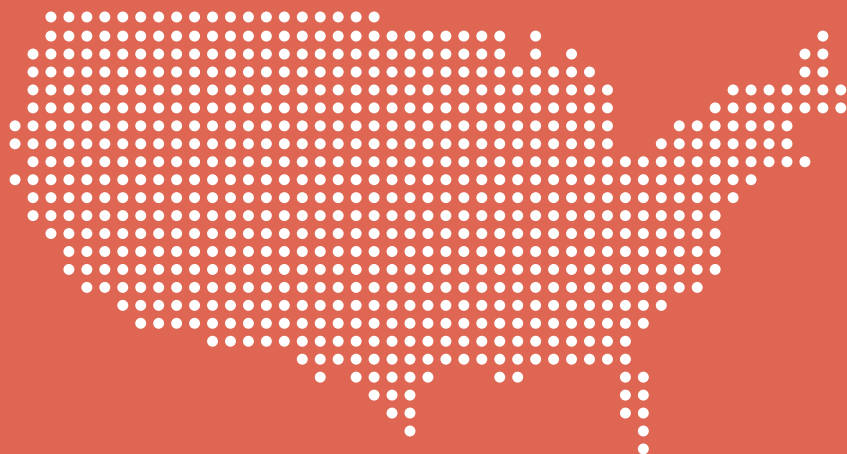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목차

CONTENTS

1장	미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 8 1. 사회적 특성 • 9 2. 인구 및 출산율 • 10 3. 여성취업률 • 13 4. 행정 및 전달체계 • 14
2장	육아지원 관련법 • 19 1. 가정양육 지원 관련법 • 20 2. ECEC 서비스 관련법 • 25
3장	육아지원 정책 현황 • 39 1. 가정양육 지원 정책 현황 • 39 2. ECEC 서비스 관련 정책 현황 • 42
4장	주요이슈 분석 • 67 1. ECEC 행정 부서 통합 • 67 2. 주립 유아학교(State Preschools) 정책의 정착 • 69 3.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 71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72 5. 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 대응책 • 73
5장	맺음말 • 76
참고 문헌	• 80

미국의 육아정책 프로파일



일반

3억 3천 2백만 명

1.64명

전체인구

3억 3천 2백만 명

(2021.9월 기준)¹⁾

출산률

1.64²⁾

63,543.60
달러

67,521
달러

1인당 GDP

63,543.60달러

(세계평균 17,109.451달러)

(2020년 기준)³⁾

가구당 연평균 수입(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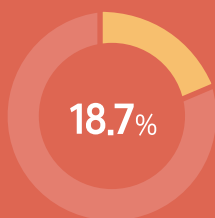
67,521달러⁴⁾

1) U.S. Census Bureau,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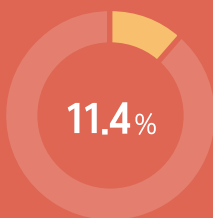
2) PRB, 2021.

3) The World Bank,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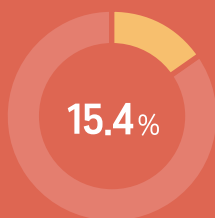
4) Shrider, Kollar, Chen, & Semega, 2021.



사회 복지 지출
GDP의 18.7%
(OECD: 20%)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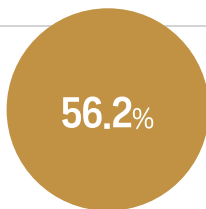
빈곤율
11.4%⁶⁾



아동 빈곤율
15.4%
(0~5세)⁷⁾

여성 노동 참여율과 출산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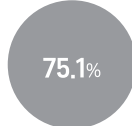
여성
노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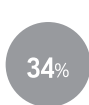
16~24세



25~5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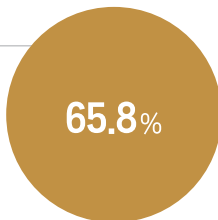


55세⁸⁾~



6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 참여율
65.8%⁹⁾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12개월 중 12주까지 무급휴직,
9개 주는 유급휴직 규정 있음.



5) OECD, 2019.

6) Shrider, Kollar, Chen, & Semega, 2021.

7) Children's Defense Fund,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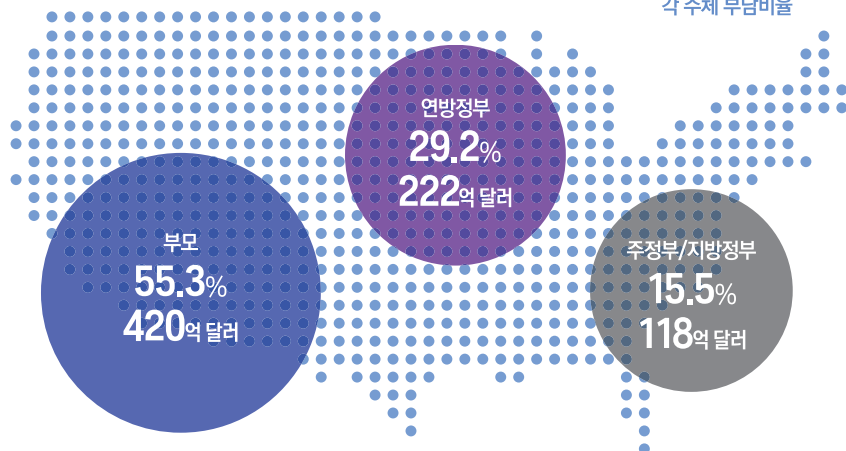
8)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c.

9)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a.

미국의 육아정책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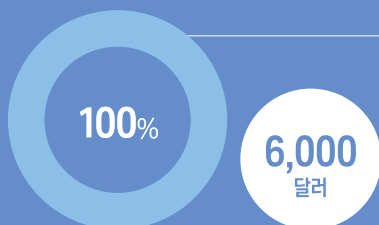
유아교육과 보육

4세 이하 유아교육 전체지출비용 중
각 주체 부담비율



의무 취학 연령

6세(대다수 공립학교에서 5세 학급[Kindergarten]이 운영되고 있으나
의무교육은 아니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식 의무교육이 시작됨.)



4세 이하 유아교육 재정 부담
공립학교, 헤드스타트, 조기헤드스타트,
주립유아학교를 제외하고는
4세 이하 아동 부모부담이 100%
(1년 평균지출 6,000달러).

무상 서비스에 대한 법적 수혜 자격

5세부터 무상교육. 그러나 주립유아학교프로그램에서 무상교육 받는
4세(34%)가 증가하고 있음.¹¹⁾

10) Leonhardt, 2020.

11) Friedman-Krauss et 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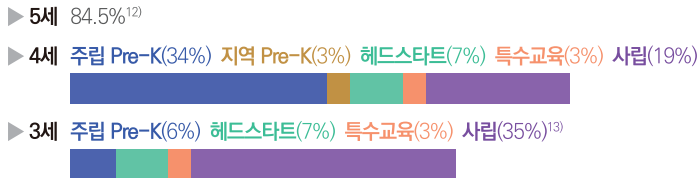
12)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9.

주요 서비스 유형

- ▶ 일반적으로 정부부 인허가를 받은 육아지원기관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스템: 가정보육, 보육센터, 유아교육기관 등에서 반일제 혹은 종일제 서비스
- ▶ 주립 유아학교(Preschool, Pre-K) 시스템: 각 정부부 감독 및 지원 하에 공사립유아교육 기관에서 3~4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Pre-K 프로그램(주립 유아학교)
- ▶ 공립학교에서 5세 아동에게 제공되는 유치원 프로그램
- ▶ 저소득층 가정의 3~4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 ▶ 저소득층 가정의 0~3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정규 서비스 이용률

(단위: %)



교사 자격

- ▶ 공립학교 유치원과 주립 Pre-K 프로그램 주교사는 4년제 대학 학위 소지자
-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주교사 중 50% 이상은 유아교육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모든 교사는 CDA(Child Development Associate) 이상의 자격, 아동발달 수업 이수 및 1년 내 영유아발달 수업 혹은 훈련을 이수한 자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학급 당 최대 수용 인원

전국적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아래 내용은 권장사항¹⁴⁾



13) Statista, n.d.e.

14) ChildCare.gov, n.d.

미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북으로는 캐나다, 남으로는 멕시코와 접경하고 있는 나라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였다. 미국은 국토면적(약 983만 km²)으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러시아와 캐나다가 1, 2위)이고, 인구 규모로도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큰 나라이며, 국가 GDP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국제통상 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세계 3대 수출국에 속한다.

미국은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이 위치한 연방 자치구인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그리고 5개의 연방 영토(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제 공화국이다. 정부체제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시, 군) 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는 상원(각 주에서 대표 2인씩으로 구성)과 하원(각 주에서 최소 1인 이상이며, 인구비례해서 의원 수가 할당됨, 총 435인)으로 구성된다. 두 개의 주요 정당으로는 중도우익 혹은 보수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과 중도좌익 혹은 자유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이 있다.

1. 사회적 특성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다. 전반적으로는 백인이 다수이지만, 열린 이민 정책으로 인해 해마다 이민자가 늘어나서, 서부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경우에는 아시아계 및 남미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미국 경제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이민자 정책은 전보다는 엄격해졌고, 국가예산 편성 시에 교육이나 환경 등의 분야보다 군사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커졌다. 경제규모와는 달리 사회보장 및 육아 정책은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지원이 제한적이다.¹⁾

미국의 사회·정책적 특성이라면, 모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정책보다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 빈곤층 아동을 위한 특수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이다. 1960년대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1990년대의 저소득가정 대상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이러한 육아관련 정책 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사회의 전통, 통념, 가치체계 등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육아 정책을 이끌어 온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²⁾

1)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 전국의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육 정책안을 제시함. 2장의 바이든 정부의 육아관련 공약과 정책안 참조

2) Kamerman & Kahn, 1997; OECD, 2001; 조은경, 김은영(2008). 미국의 육아정책, p. 21에서 재인용.

〈표 1-1〉 미국 육아정책의 기저에 내재되어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 개인주의: 집단의견/공동가치보다는 개인의 선택/책임에 가치를 둠
- 가정은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 가정사에 정부 개입 최소화
- 청교도주의: “선”이란 법으로 제정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voluntarism)
- 교회와 국가의 분리: 다양한 종교의 자유 보장
- 사회적 적자생존주의(Social Darwinism): 적자생존은 “자연의” 질서이며 사회적 개입은 그러한 질서에 어긋난다고 보는 19세기 중반의 “과학적” 신념
- 일하는 자가 가치롭다고 여김(A strict work ethic)
- 유럽식의 “자유주의”인 경제 사회정책(Laissez-faire) 및 시장(market) 경제를 통해 사회가 성장하고 번영하게 된다는 이념
- 이민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
- 시민전쟁(1865) 이후의 노예해방과 민권운동(the civil rights movement, 1960년대),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인종주의의 잔해
- 연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 (19세기 말까지)
- 사회적 영역에 대한 책임은 각 주정부 소관

자료: Kamerman & Kahn, 1997; OECD, 2001; 조은경, 김은영(2008). 미국의 육아정책, p. 21에서 재인용.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육아는 국민들 개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과 맞물려서, 각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가치체계는 변화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육아정책에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유아교육의 경제적 효과 및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유아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흐름도 가시화되어 왔는데(조은경, 2020), 그 정점을 찍은 예로는, 2021년 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한 전국 3~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유니버설 프리케이 프로그램) 정책안을 들 수 있다.

2. 인구 및 출산율

가. 인구

2021년 9월 기준, 미국의 총 인구는 약 3억 3천 2백만 명 이상으로, 중국(14억 명), 인도(13억 4천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다(U.S. Census Bureau, n.d.). 가구 수로는 약 1억 2천 8백만 가구가 있고, 가구당 평균 가족 규모는 3.14명이다(Statista, n.d.b, n.d.d).

빈곤층 가구의 비율은 9%이며, 양부모 가정(4.7%)보다는 편부모 가정(편부: 11.4%; 편모: 23.4.%)의 빈곤율이 훨씬 높다(Shrider, Kollar, Chen, & Semega, 2021, p. 19). 배우자가 없는 편모 가정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38.1%)과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46.2%)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Shrider et al., 2021, p. 19).

연령그룹별로 보면, 0~14세 인구는 18.37%를 차지하고, 15~64세 인구는 65%, 65세 이상 인구는 16.63%이며, 노인층 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이다(Statista, n.d.a). 노인층 인구는 미국 사회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연령층으로서, 어린 자녀가 있는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젊은 부부의 가정보다 경제력에서 우세하며, 또한 사회적 영향력에서도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및 이민자 가정들보다 정치적 입김이 센 인구층이다. 노인 정책과 육아 정책은 다른 정책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국가예산을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노인관련 정책(연금제도, 유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활발한 반면, 육아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더 지원되고 계발되어야 할 분야로 평가된다(조은경, 김은영, 2008).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며, 점점 다문화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57.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히스패닉(18.7%), 흑인(12.1%)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히스패닉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Jensen et al., 2021). 지역별로 인종분포가 다른데, 서부와 남서부 지방은 히스패닉 인구 밀집지역들이 많고, 남부지방에는 흑인 밀집지역이 많으며, 알래스카인들과 미국 원주민(American Indian) 부족들은 알래스카와 중서부 지역에 밀집해 있다(Jensen et al., 2021). 이러한 인종구성은 미국의 각 주정부 육아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히스패닉 및 아시안계 가정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정부 자료와 문서가 해당 언어로도 출간되며, 정부 웹사이트에도 해당 언어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히스패닉

및 아시안계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 또한 계속 나오고 있다.

나. 출산율

2020년 기준, 미국의 15~44세 여성 1,000명당 55.8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신생아 수는 증가추세가 정점에 달했던 2014년을 기점으로 2020년까지 매해 2%씩 감소 추세이며, 이는 1979년 이래로 최저치이다(Hamilton et al., 2021, p. 2). 여성이 가임기 동안 출생한 자녀수는 1인당 1.64(세계: 2.3, OECD: 1.6)이고, 신생아를 출산한 모성 중 15~19세 여성의 비율은 4%(1990년: 13%), 35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19%(1990년: 9%)에 이른다(PRB, 2021, p. 1).

미국은 결혼 및 이혼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높고, 혼외 자녀 출산율도 40%에 이른다(크리스찬 저널, 2018). 18~44세의 성인 중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비율은 59%에 이른다(Graf, 2019).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모 중 4분의 1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비혼 부모는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비혼 부모 중 35%가 동거 상태이고, 12%는 편부, 53%는 편모이며, 편부와 편모 가정의 빈곤율(27%)은 비혼 동거가정(16%)에 비해 상당히 높다(Livingston, 2018). 18세 미만 아동의 약 3분의 2(65%)는 결혼한 가정의 두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3분의 1은 편모(21%), 편부(4%), 비혼 동거부모(7%)와 함께 살고 있다(Livingston, 2018).

미국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기존에는 결혼한 부모와 자녀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훨씬 넓은 영역의 개념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즉, 동성의 미혼 파트너 두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을 이룬 경우, 십대 임신으로 미혼모 가정을 이룬 경우, 이혼 후 편부모가정이 된 경우,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조부모가 손자를 기르는 경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예를 들어, “여성, 영아, 아동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 위탁가정 프로그램, 양육 지원금 프로그램, 손자손녀 혜택 프로그램 등).

3. 여성취업률

2021년 9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5.2%이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b). 전체 가구 중 빈곤율은 11.4%인데, 여성이 가장인 가구의 빈곤율은 23.4%에 이른다(Shrider et al., 2021, pp. 13~14). 노동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47.0%이고, 정규직을 가진 직장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3.6%, 남성 비율은 56.4%이며, 비정규직의 63.0%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n.d.a, n.d.c). 2020년 기준으로 여성 취업률을 연령별로 보면, 16~19세(34.9%), 20~24세(67.5%), 25~34세(75.7%), 35~44세(75%), 45~54세(74.7%), 55~64세(59.1%), 65세 이상(22.4%)의 각 그룹에서 취업률이 상이하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c).

2020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취직을 했거나 구직상태인 여성의 비율은 71.2%, 가장 어린 자녀가 6~17세인 여성의 취업률은 75.4%,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65.8%이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a).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대가 유아기인 여성의 경우, 3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63.3%, 3~5세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률은 69%에 이른다(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n.d.b).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여성 중, 결혼한 남녀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의 여성 취업률은 61.4%, 여성이 세대주인 가정의 여성 취업률은 64.6%이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a). 미혼모가정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증가하며 특히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하루 종일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어머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 육아문제는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주로 자생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 국한되어 왔으나, 현재는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2장과 3장 참조).

4. 행정 및 전달체계³⁾

영유아(학령전 아동) 및 가족 관련 정책들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획 및 실행되고 있으며, 여러 정책 분야에 걸쳐 각기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 정부기관 중에서 육아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농무부, 주택부, 재무부, 사회보장 관리국 등이 있으며, 각자 관할 영역의 아동 가족관련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조은경, 김은영, 2008, pp. 26~27에서 재인용)

〈표 1-2〉 연방정부 부처별 아동 가족 관련 정책 관리 영역

연방정부 부처	정책
보건복지부	건강, 보육, 아동복지
교육부	교육, 특수교육
노동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농무부	푸드 스탬프 (food stamp)
주택부	주택 바우처 (voucher)
재무부	세제 혜택 (세금 공제)
사회보장관리국	유가족 혜택 (survivor's benefits) 장애아동 혜택 (benefits for disabled children)

자료: 조은경, 김은영(2008). 미국의 육아정책, p. 27에서 재인용.

육아정책을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들은 주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복지부 혹은 사회부(복지 담당), 고용 및 사회부(보육 담당), 교육부, 건강부, 정신건강부, 혹은 주에 따라 아동 및 가족부 등으로 불리는 부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경우, 연방정부는 교육법을 통해 국가차원의 교육 계획 및 방향제시를 하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정책결정을 내리고 운영한다. 50개의 주정부와 5개의 미국령 영토와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은 미연방 영토 내의 모든 학교들에 공통

3) 해당 장은 '미국의 육아정책(조은경, 김은영, 2008)'의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함.

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2장 참조)은 있으나,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기틀을 제공하는 전국단위 교육과정은 없으며, 각 주별로 “고도의 지방분권적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미합중국 헌법(1787)의 제10차 개정안(1791)에 보면, 헌법에 의해 주어지는 권한과 힘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와 그 주민들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에 의해 설립되고 관리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역사는 17세기와 18세기 당시 유럽으로부터 이주해 온 정착민들로부터 시작된 식민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재의 미국을 구성하게 된 초기 13개의 영국령 식민지 중 일부는 식민 정부가 교육을 담당하였고, 일부는 각 지역사회가 교육을 책임졌다. 즉, 각 지역사회가 각자의 우선순위, 가치, 필요 등에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재까지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초·중·등 교육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미 연방 헌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주 헌법과 규정에 따라 교육정책을 시행한다. 학교를 설립하고 인가하고 관리하는 몫은 각 지방 정부에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 헌법에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주 의회 의원들이 교육정책 및 교육 관련 재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 의회의 권한 중 일부는 각 지역의 교육기관이나 학교군으로 위임되어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실행에 옮겨진다. 미국에는 약 15,000개의 학교군이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 예산을 세우고 교육 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상당한 권한을 학교군에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학교군은 의사결정 권한 및 예산집행 권한을 각 일선 학교에게 부여하고 있다.

〈표 1-3〉 공교육(K-12)에 대한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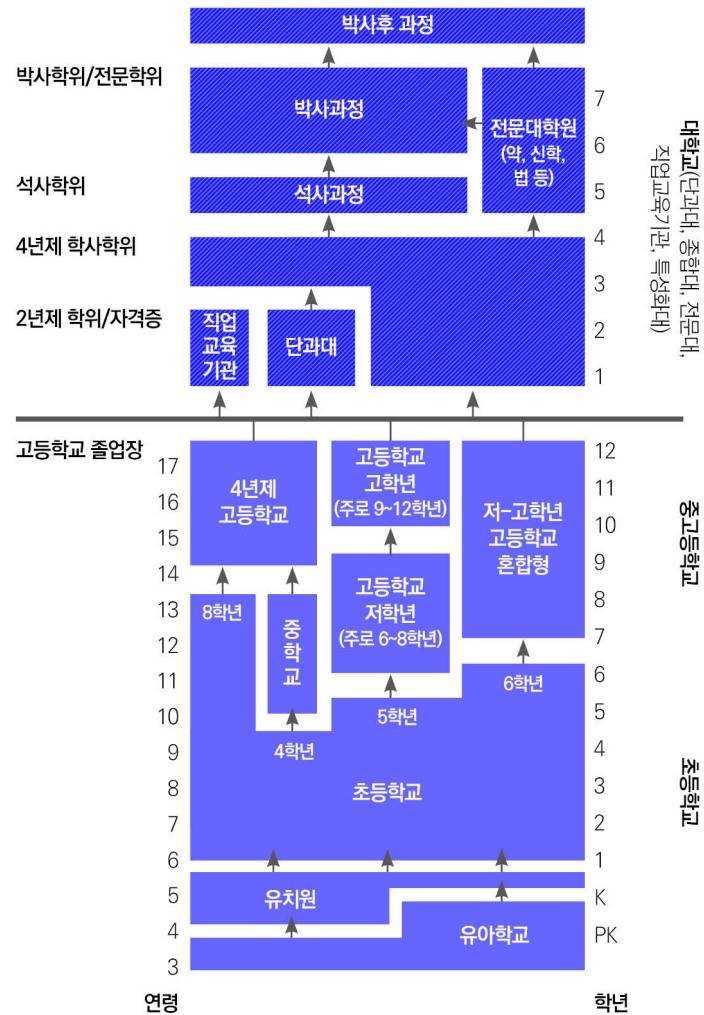
정부	역할
연방정부	• 연방의회에서 교육 법령 통과 • 연방 교육부에서 교육관련 법령 시행(자료수집, 연구, 재정지원, 정책수립) • 연방부처(노동부, 국립과학재단 등)를 통해 재정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
주정부	• 교육과정 지침 및 수행평가 기준 마련 • 학군 및 학교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사립 초·중등 학교 인가 • 교사와 교육관료 인준 • 학생 학업성취도 시험 실시 • 학업 성취도 결과를 연방 교육부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수립 • 고교 졸업 기준 마련 • 주정부 및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각 학군으로 분배 • 최소 교육일수 지정
지방 정부 (시/군)	• 예산 의결 • 각 학교 및 프로그램으로 지원금 분배 • 교사 및 교직원 채용 • 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연간 보고서 준비 및 발행 • 교사 및 관리자 임금 산정 • 교육과정 실행 • 교사 현직교육 계획 및 관리 • 통학버스 운영 • 학교 건물 건립 및 관리 • 교육비품 구매

출처: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brief overview. pp. 23~26.
 조은경, 김은영(2008). 미국의 유아정책. p. 25에서 재인용.

유아교육의 대상연령을 0~8세까지로 볼 때, 유아교육이 공교육에서 다뤄지는 학년은 일부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주정부 유아학교(State Preschools, PreK, 혹은 PK)를 포함하여, 유치원(Kindergarten, 5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교육체계를 보여준다.

[그림 1-1] 미국의 교육체계



출처: De Brey, C., Snyder, T. D., Zhang, A., & Dillow, S. A. (2021).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9 (NCES 2021-009), p. 14. <https://nces.ed.gov/pubs2021/2021009.pdf> (2021. 10. 10. 인출)

5세 이상이 교육을 받는 공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가 크고 작은 정책결정을 내리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유아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Head Start)프로그램이 있고,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제공되는 주립 유아학교가 있다.⁴⁾ 육아관련 정책들은 각 주별로 이루어지며, 관련 서비스도 공교육기관, 영리기관, 종교기관, 자선단체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최근에는 주정부 유아학교를 통하여 아동에게도 공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육아지원 관련법

지난 2021년 1월 20일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 28일에 “미국의 가족들을 위한 계획”(The American Families Plan)을 공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지원 정책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The White House, 2021).

첫째, 13년의 무상 공교육기간을 최소한 4년 연장한다. 유치원(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던 13년의 공교육 연한을, 앞뒤로 각각 2년의 유아학교(preschool) 교육과 2년의 전문대학(communitry college) 교육을 포함하여, 4년간 연장하여 17년간의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이 중 3~4세 유아에 대한 2년간의 무상 유아교육을 위해 2,000억 달러 투자를 의회에 요청한다.

둘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국연합을 형성하여 전국의 모든 3~4세 아동들이 무상으로 양질의 접근성 높은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프리케이 프로그램과 헤드스타트 직원들이 최소한 시간당 15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공립 유아교사들은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한다.

셋째, 전국 종합 육아휴직 및 병가 프로그램(national comprehensive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 과 각종 세금 공제(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자 양육 세액 공제)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책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며 각 주정부와도 조율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지만, 세 번째 세금공제 관련 정책안의 경우, 이미 국세청에서 2020년 세금에 대한 환급의 형태로 자녀 당 지급금이 2021년 6월부터 제공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육아지원 관련법을 가정양육 지원 관련법과 ECEC 서비스 관련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양육 지원 관련법

가. 육아휴직(Family Leave)

미국은 선진국 중 유급 육아휴직(paid family leave)법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각 주별로 각기 다른 육아휴직법이 시행되고 있다(Williams, 2021). 무급이지만 육아휴직 및 복직을 보장하는 관련 연방법으로는 1993년에 제정된 ‘육아휴직 및 병가에 관한 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직장인이 가정사 혹은 질병 등의 이유로 직장을 쉬게 될 경우, 12개월 중 12주(매년 약 3개월)까지 무급휴직과 그 이후 복직을 보장받으며, 직장의료보험 혜택도 휴직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은 신생아 출산, 생후 1년 미만 영아의 육아, 새로 입양한 자녀와 연대감 형성,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위탁가정에 보내는 준비,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 돌봄 등과 같은 상황에서 무급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n.d.). 그러나 이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기업,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혹은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에서 최소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동안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 국한된다(U.S. Department of Labor, n.d.).

나. 육아수당 (Child Care Allowance)

미국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자녀수당 혹은 가족수당이 없는 대신, 가족 구성원의 수, 자녀의 수, 가계 수입 정도에 따라 세금공제 및 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층의 경우, 육아지원금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정에 직간접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연방세금 환급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연방세금 환급은 아래의 세제혜택 섹션에서 다룬다).

개정된 사회보장법인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PRWORA) 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육아정책 관련조항은 제1조 “저소득가정 대상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조항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혼외 임신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저소득층 아동 및 편부모 가정의 문제 및 부가적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정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저소득층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바람직하게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존의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였다. 이 조항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연방기금을 보내면, 주정부에서도 연방기금의 일정비율(Maintenance of Effort: MOE)만큼의 주정부기금을 더하여 지방 정부로 보내고, 지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연방기금을 사용하고 이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TANF는 이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of 1935)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을 개정한 것인데(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n.d.), 개정된 법의 두 가지 주요내용은 (1) 직업 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work requirements)과 (2) 수혜기간 제한(time limits)이다. TANF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수혜가정은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연방법에서는 TANF 수혜가정의 50%는 일주일에

최소한 30시간을 직업 관련 활동(직장생활, 직업 관련 경험 쌓는 일, 지역사회 봉사, 12개월간의 직업 훈련)에 종사하도록 정하였다. 단, 예외가 되는 경우는, 6주의 구직기간,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1살 미만의 영아가 있는 어머니 등의 경우이다.

저소득층 가정이 TANF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장 수혜 기간은 5년간이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 이 기간을 더 짧게 줄일 수도 있고, 수혜 가정의 20%에 대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 제한 조항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예, Social Services Block Grant, 주정부의 사회보장교부금)을 통해서 현금이 아닌 형태의 지원과 바우처 등을 받을 수가 있다.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보낸 TANF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직업훈련을 받기 힘든 가정의 경우에는 육아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교육기관을 오가는 교통비 및 직장생활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비용도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지라도 의료보호 혜택을 1년 이상 받을 수 있고 다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사회보장법 하에서 혜택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 가정도 있다. 즉,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중 많은 가정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 가정들이다. 이전 사회보장법에서는 이들도 혜택을 받았으나, 개정법 하에서는 이민 후 5년이 되지 않은 이민자 부모들은 수혜자격 미달이 된다(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21). 또한, 수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으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직업훈련을 끝내지 못 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가정의 경우, 더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 세제혜택

1)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육아수당은 없지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지출한 양육비에 대해 연방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너진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3월에 서명한 ‘2021년 미국 구제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은 1조 9천억 달러(1.9 trillion dollars, 약 2,145조원)를 투입하여 실행될 각종 구제안과 부양책을 포함하고 있는데(U.S. Congress, 2021;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1a), 이 중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도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적격자녀 수에 따라 연방정부에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공제받는다.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중, 17세 미만의 자녀 각 1인당 1,000달러씩을 감세 받을 수 있다(Benefits.gov, n.d.). 2021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2022년에 세금보고 시에 환급받게 되는 2021년 연방세에 대한 환급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근로소득세 공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ITC 프로그램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수입정도와 가족상황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고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9세 미만(혹은 24세 미만의 전업학생) 자녀(입양/위탁 포함)/손자녀가 있고, 근로소득이 중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하는 가정에서 신청 가능하며, 장애 여부, 자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세에서 감면되는 공제액이 달라진다(IRS, 2021b). 자녀수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율과 소득기준이 다르다.

2021년의 경우, 근로소득세 공제율은 자녀수에 따라 7.65%~45%에 이르는 차이가 있다. 세금공제가 가능한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 2020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 세액 공제 가능한 저소득층가정의 소득기준

자녀 수	공제율	연소득 상한액 (싱글 및 부부 따로 보고)	연소득 상한액 (부부 함께 보고)	최대 공제액
0	7.65%	15,820달러	21,710달러	538달러
1	34%	41,756달러	47,646달러	3,584달러
2	40%	47,440달러	53,330달러	5,920달러
3	45%	50,954달러	56,844달러	6,660달러

주: 이 표는 2020년 12월 30일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2021년 10월 14일에 발표된 소득기준 및 공제액(National Conference on State Legislatures, 2021b)은 이 표의 금액보다 상향되었음.

자료: 1) IRS. (2020, December 30). *Tax year 2020 income limits and range of EITC*.

<https://www.eitc.irs.gov/eitc-central/about-eitc/income-limits-and-range-of-eitc/income-limits-and-range-of-eitc> (2021. 7. 20. 인출)

2) Tax Policy Center. (2021, March 19.). EITC Parameters: 1975-2021.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parameters> (2021. 9. 20. 인출)

3) 자녀 및 부양자 양육 세액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돌봄이 필요한 13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양육비용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IRS, 2021c). 지출된 양육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비율은 20~35% 정도이며, 가계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15,000달러 미만이면 지출비용의 총 35%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소득 2,000달러마다 공제율은 1%씩 낮아지는데, 최저 공제율인 20%까지만 낮아진다. 양육비용은 1인당 최고 3,000달러까지, 2인 이상은 최고 6,000달러까지 소득세감면용으로 신고 가능하다. 공제액은 환급액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가정에서 환급받는 현금 가치는 없다(IRS, 2021c).

2. ECEC 서비스 관련법

미국의 육아정책에서 보육이라는 용어는 주로 3세 미만의 아동대상 서비스에 사용되며, 3~4세 아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5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 혹은 초등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명확히 선을 그어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으며, Early Care an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등의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이분적 정책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본서에서는 필요시에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 교육·보육)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미국 유아교육계에서는 ECEC 대상연령을 0~8세까지로 본다. 0~8세 아동의 서비스에 관련된 연방법에는 ‘육아발전지원금법(Child Care Development and Block Grant Act: CCDBG Act)’, ‘헤드스타트 법(Head Start Act)’,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등이 있다. 특수 아동 대상 교육의 경우, 특수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른다. 각 법의 영향을 받는 대상아동 연령대는 다음과 같다.

〈표 2-2〉 ECEC기관 관련법과 대상아동의 연령대

법	관리대상	대상아동연령대		
		0~3세	3~5세	5~8세
CCDBG Act	CCDF 일괄교부금 받는 주정부	○	○	○
Head Start Act	Head Start 지원금 받는 0~5세 ECEC 서비스 기관	○	○	
ESSA	주정부, 학군, 학교		○	○
IDEA	주정부, 교육기관, 조기개입 기관	○	○	○

자료: 1) Lynch, K. E. (2016). CCDBG Act of 2014: Key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status. *CRS in focus*, IF0416.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416> (2021. 9. 20. 인출)

-
- 2) Office of Head Start. (n.d.). History of Head Start.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head-start> (2021. 10. 9. 인출)
 - 3) U.S. Congress. (2015). Every Student Succeeds Act.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2021. 9. 20. 인출)
 - 4) U.S. Department of Education. (n.d). About IDEA. <https://sites.ed.gov/idea/about-idea/#IDEA-Purpose> (2021. 10. 10. 인출).

각 법에 따라 대상, 법의 영향을 받는 주체, 재정지원의 흐름 등이 다르다. 아래에서는 각 법이 육아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가. 육아발전지원금법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육아발전지원금법(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CCDBG Act)은 육아발전지원 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 활용에 관한 법이다. 해당 법에 의해, 육아발전지원 기금(CCDF)이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지방 정부로 교부된다. 1996년에 처음 제정된 이 법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2014년 개정된 CCDBG법에서는 아동발달과 양질의 보육이 강조되었다(Lynch, 2016).

주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대상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1) 노동활동·직업훈련·구직활동 중인 가구, (2)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3) 가구소득이 주 내 가구 중간소득(state median income)의 85% 미만인 가구여야 한다(Lynch, 2016). 이 육아발전지원 기금(CCDF)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고,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정부·지방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Office of Child Care, n.d.).

이 CCDBG법은 각 주정부가 주 내 보육·유아교육 기관의 보건 및 안전 조항을 정하고,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질 향상 정책을 확대하며, 보육·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가정·대중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한다(Office of Child Care, n.d.).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CCDF기금의 최소한 12%를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로 사용해야 하며, 70%는 직접비로 보육비 지원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부담금은 가구소득의 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Lynch, 2016).

연방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각 주정부는 관련정책을 융통성 있게 정한다. 즉, 각 주별로 가정에 대한 지원금 비율(subsidy payment rates), 가정의 육아 부담비(copayment), 지원 대상 가정의 소득 기준, 질 향상 위한 투자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운다(Office of Child Care, n.d.).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은 보육·유아교육 기관 인증(child care licensing), 질 개선 체계(quality improvement systems), 보육·유아교육 종사자 훈련 등에 관한 정책이다.

〈표 2-3〉 CCDBG법에 의해 주정부가 세워야 하는 보육/유아교육 기관 관련 정책의 예

정책 종류	정책 내용	의무사항
건강과 안전	보육/유아교육 기관의 보건 및 안전 정책	보건 및 안전 기준 공시
질 향상	보육/유아교육 기관 인가 보육/유아교육 기관 질 개선 보육/유아교육 종사자 채용기준 보육/유아교육 종사자 훈련	인가 기관 목록 공시 질 등급 정보 공시 전문성 개발 자문위원회 발족 전문성 개발 기틀 공시

자료: Lynch, K. E. (2016). CCDBG Act of 2014: Key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status. *CRS in focus*, IF0416.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416> (2021. 9. 20. 인출)

CCDBG법에 의하면, 주정부는 위의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하고, 그 결과보고 역시 전자보고서로 발행해야 하며, 일반가정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유아교육 기관 목록과 각 기관의 질 등급(quality rating) 정보를 공시하고, 지원금을 받는 보육·유아교육 기관 종사자의 채용기준을 정하고 현직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유아교육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을 정하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Lynch, 2016).

종사자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틀은 (1) 핵심 지식과 역량(core

knowledge and competencies), (2)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ways), (3) 자문위원회 구조(advisory structures), (4) 연계 협정 articulation agreements), (5) 종사자 특성 및 훈련에 대한 정보(information on workforce characteristics and access to training), (6) 재정지원(financing)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Lynch, 2016). 이러한 연방방법으로 인해서 각 주정부 별로 ECEC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ECEC 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틀이 갖춰지게 되었으며, 해당 정보들이 주정부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일례로, 뉴햄프셔주의 경우에는 SparkNH⁵⁾라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ECEC 관련정책의 주요내용들이 논의되고 주정부에 전문가집단의 의견이 전달된다. 연방정부의 해당부서(Office of Child Car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에서는 각 주정부·지방 정부가 CCDF기금을 잘 운용하도록 지침서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실행사항을 관리·감독한다(Office of Child Care, n.d.).

나. 헤드스타트 법(Head Start Act)

1) 1965년 헤드스타트 법과 2007년 개정법(Head Start Act of 1965 and Improving Head Start Act of 2007)

1964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경제기회법”(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을 통해 “빈곤과의 전쟁”을 시작하였고,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아교육, 아동발달, 정신지체, 소아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4인의 헤드 스타트 계획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전인적 아동관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자, 영양, 신체적·정신적 건강, 부모 참여,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유아교육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Zigler et al., 1993).

1965년에 제정된 헤드스타트 법(Head Start Act of 1965)은 저소득층의 3~4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8주간의 여름 실험 프로그램에 관한

5) <https://sparknh.com>

법으로 시작되었다. 1975년에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기준(The 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HSPPS)’이라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관리감독 규정을 발표하였다. 1994년에 재승인되면서 1995년부터 저소득층의 임신 여성과 3세 미만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현재는 학령전(0~5세)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종합적인 아동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성과 인지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98년에 재승인되면서 서비스를 종일제로 1년 내내(full-day and full-year services) 제공하도록 정하였다. 2007년에는 ‘학교준비를 위한 헤드스타트 법(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 of 2007)’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된 헤드스타트 법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표 2-4〉 2007년 개정된 헤드스타트 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연방-주 연계 강화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의 ‘학교 준비 목표’와 주정부의 ‘조기 학습 기준’ 연계
교사 자격 강화	헤드스타트 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자문 강화	각 주정부 내에 ECEC 자문위원회 구성
관리 감독 강화	아동 평가(child outcomes)와 회계감사 등 프로그램 감독 강화
훈련/지원 체계 강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센터와 주정부 단위의 시스템으로 헤드스타트 훈련 및 기술지원 체계 재구성
투명성 강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 기준(HSPPS) 개정

자료: Office of Head Start. (n.d.). History of Head Start.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head-start> (2021. 10. 9. 인출)

기존 헤드스타트 법에 의하면 100% 빈곤층 기준에 드는 가정의 아동만이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07년 재인준을 받은 헤드스타트 법(Public Law 110-134, 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 of 2007)에서는 각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가능한 아동의 35%까지는 빈곤층 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도 등록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범

위가 상향조정되었다(NIEER, 2008). 저소득층 기준은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기준에 근거한다(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2020). 보건복지부의 빈곤 가정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5〉 연방정부의 빈곤가정 기준: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 상한선(2021년)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상한선	가족 구성원 수	소득 상한선
1명	12,880달러	5명	31,040달러
2명	17,420달러	6명	35,580달러
3명	21,960달러	7명	40,120달러
4명	26,500달러	8명	44,660달러

주: 8인 초과 가정의 경우, 초과 1인당 4,540달러씩 소득 상한선이 높아진다. 해마다 기준액은 달라진다.
 자료: U.S.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2021). Annual update of the HHS poverty guidelin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2/01/2021-01969/annual-update-of-the-hhs-poverty-guidelines> (2021. 10. 18. 인출)

2)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Act, Section 645A)

연방정부의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Programs)’에 관한 법은, 헤드스타트 법(Head Start Act)의 Section 645A 조항에서 다뤄진다. 이 조항은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미리,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통합적인”(Head Start Act, Section 645A(b)(1))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 지원, 부모 상황과 요구에 맞는 지원, 부모-자녀 상호작용 증진, 부모 훈련, 지역사회기관 연계 서비스, 문제 행동 조기 검진 및 정밀검사 의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임산부에게서 탄생하며, 생애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 및 영유아 발달을 촉진시키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법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 임

산부와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족이다.

공립·사립 기관, 영리·비영리 기관, 종교기관, 지역사회 기관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되면, 앞서 기술된 영유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방지원금을 사용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받고, 지역 담당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꾸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최소한 1인 이상의 영유아발달 전문가를 고용하는 데에도 연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2021년 현재,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 대상 학교교육은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 ESEA)의 2015년 개정법이다.

초중등교육법(ESEA)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ESEA)은 각 시대별로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장령령, 박주현, 2019). 1980년대에는 레이건 행정부의 ‘교육통합 및 개선법’(Education Consolidation and Improvement Act of 1981), 1990년대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미국학교 개선법’(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 of 1994), 2000년대에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NCLB) 등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한 명칭으로 불렸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개정된 이 개정법의 명칭은 ‘모든 학생의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of 2015: ESSA)이다(Public Law 114-95). 1965년 당시의 초중등교육법(ESEA)과 2015년 개정된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의 각 조항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초·중등교육법(ESEA)과 2015년 개정된 법(ESSA)의 각 조항 및 내용

조항	ESEA	ESSA
1조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교육을 위한 학교 재정 지원	주 교육부와 학군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 개선 (예, 저소득층, 이주민, 방치된 아동 대상)
2조	학교 도서관 자료, 교재, 교수학습 자료	양질의 교사, 교장, 학교 리더의 준비, 훈련, 모집
3조	보충 교육 센터와 서비스	영어학습자와 이민자 아동의 언어 교육
4조	교육 연구 및 훈련	21세기의 학교 (균형있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공학, 방과후 학습, 자율형 학교, 부모연대)
5조	주정부 교육국 강화 기금	주정부 혁신 및 지역적 융통성 (도시산간 및 오지의 교육)
6조	일반 항목	미대륙, 하와이, 알래스카 원주민 교육
7조	특수아동 지원	Impact Aid
8조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일반 항목

자료: 1) U.S. Congress. (2015). Every Student Succeeds Act.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2021. 9. 20. 인출)

2) Skinner, R. R. (2020).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as amended by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A primer. *CRS Report, R45977*.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977> (2021. 9. 20. 인출)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은 모든 아동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전 부시 행정부 당시에 개정된 ‘아동 낙오 방지법(NCLB)’에서는 연방정부가 학업성취도 기준을 정하고, 매년 3~8학년 학생들의 읽기 및 수학 능력에 대해 표준화된 학력평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매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진전 여부를 평가한 후 이를 교사와 학교 평가에 사용하였는데, 연방정부가 정한 학업성취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을 삭감하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교육만을 강조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오바마 대통령 때에 개정된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에서는 3~8학년 학생에 대한 연례평가제도는 유지하되, 연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서, 각 주정부와 학군에서 평가방법, 학업성취 목표와 기준을 정하여서 연방 교육부에 보고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U.S. Department of Education, n.d.a). 유치원(Kindergarten)과 1~2학년 아동들은 표준화된 연례 학력평가시험 대상이 아니지만, 3학년부터 시작되는 표준시험과목인 읽기, 문해, 수 등의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은 그 훨씬 이전부터 교육과정 계획 및 일과계획안의 주요 일정을 차지한다.

아래에서는 ESSA의 각 조항 중 저소득층 아동 및 위기 아동을 위한 조항(Title I)과 다문화 아동을 위한 조항(Title III)을 살펴보고자 한다.

1) ESSA 제1조(Title I): 저소득층, 이주민, 방치된 아동 지원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 제1조(Title I)는 미국 정부의 불우아동(disadvantaged children) 학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Sonnenberg, 2016, p. 3). 초기에는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 중 하나로(초중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Title I Program; 유아대상 프로그램은 Head Start Program)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학업낙오 위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부진한 학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 특수아동, 미국 원주민 아동, 방치된 아동, 가족 문해 서비스를 받는 유아와 부모 등을 포함한다(Sonnenberg, 2016, p. 3). 낙오위험이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이 각 주정부의 높은 학업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TANF(저소득가정 대상 임시지원)를 받는 아동, 방치된 아동, 위탁 아동 등 Title I 대상 학생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각 학교에 재정지원을 한다(Snyder, Dinkes, Sonnenberg, & Cornman, 2019, p. xi). Title I 지원금은 4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표 2-7〉 제1조(Title I) 지원금의 종류와 대상 기준

종류	대상 기준
기본 지원금 (Basic Grants)	학교 내에 Title I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이 10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해당 학교 내 5~17세 학생인구의 2% 이상인 학교
집중 지원금 (Concentration Grants)	기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교 중, Title I 지원 대상 학생의 비율이 학교 내 학생인구의 15% 이상이거나, 지원 대상 학생 수가 6,500명 이상인 학교
선택적 지원금 (Targeted Grants)	학교 내에 Title I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이 10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해당 학교 내 5~17세 학생인구의 5% 이상인 학교
교육재정 인센티브 지원금 (Educational Finance Incentives Grants)	1차: 각 주정부 별로 공교육 지원 노력(일인당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과 교육형평성 노력(학생당 지원금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간의 차이가 적은 주)을 한 주정부에 인센티브; 2차: 해당 주정부의 학교 중 Title I 지원 대상인 학생이 10명 이상이며, 그 비율이 해당 학교 내 5~17세 학생인구의 5% 이상인 학교

자료: Snyder, T., Dinkes, R., Sonnenberg, W., & Cornman, S. (2019). Study of the Title I, Part A Grant program mathematical formulas: Statistical analysis report.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pubs2019/2019016.pdf> (2021. 10. 9. 인출)

학생의 40%가 저소득층 아동인 학교는 Title I 학교라고 부르며, Title I 지원금으로 교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Title I 지원금은 주로 종일제 유치원⁶⁾, 수학·과학·컴퓨터 실습공간, 정규수업을 보강하는 특별 방과후 프로그램과 여름 프로그램, 학습촉진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쓰이며, 일부는 교사 충원, 교사 전문성 개발, 컴퓨터 구입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Sonnenberg, 2016, p. 3).

또한, Title I, Part A는 각 학교에서 Title I 대상 학령전 아동들의 교육향상을 위해 유아학교 프로그램(preschool program)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그러므로 학교는 Title I 지원금을 사용하여 학교,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유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40%가 저소득층인

6) 많은 주에서 유치원은 의무학년은 아니지만 반일제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무상제공하고 있고, 종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주정부도 있음.

Title I 학교에서는 Title I 지원금의 100%까지 사용하여 학교 내에 유아반(PreK학년)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학군 내 모든 학교가 Title I 학교인 경우에도 Title I 지원금의 100%까지 사용하여 학군 내 유아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군과 학교에서 해당 지역 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나 보육기관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시간(반일제 헤드스타트를 종일제로 연장) 및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용도로 지원할 수도 있으며, 유아교사와 초등교사의 교사연합연수, 낙후된 Title I 유아학교 공간 수리와 리모델링, Title I 유아학교 아동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p. 10).

2) ESSA 제3조(Title III): 영어학습자와 이민자 아동 교육 지원

영어가 사용되는 미국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학습자(English Learners, EL students)와 이민자 아동은 교육과정을 소화하고 주정부의 과목별(읽기, 수, 과학) 학습기준에 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ESSA의 3조(Title III)는 영어학습자와 이민자 아동 등 다문화아동의 영어학습 및 학습 기준 성취를 지원하는 법조항이다. Title III의 법조항을 기초로 해서 연방정부 지원금이 주정부, 학군, 학교로 제공된다. 각 주 내 다문화 아동의 숫자에 따라 연방지원금이 지급되며, 주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지원금을 각 학군 상황에 맞게 배분한다. 학군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 개선 및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원금을 사용한다. ESSA 이전까지는 Title III 지원금의 용도가 다문화아동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PD)과 언어교수 교육 프로그램(language instruction educational program: LIEP) 이 두 가지였으나, ESSA에서는 세 번째 사용을 명시하였다. 즉, 다문화 가정 부모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언어교수 교육 프로그램(LIEP)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활동과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그 예로는 3~4세 아동대상 유아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교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National Clearinghouse fo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n.d.).

라. 특수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18~2019년 현재 미국에는 750만 명 이상의 장애아동과 청소년이 있다. 특수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은 0~21세의 모든 장애아동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의 권리 및 정부와 교육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법 조항은 IDEA Part C에서 다루고,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법조항은 IDEA Part B에서 다룬다.

〈표 2-8〉 특수교육법(IDEA)의 목적과 대상 및 관련법

구분	내용
목적	• 모든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기개입,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무상 공교육 보장 •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 보장 • 주정부, 교육기관, 연방기관에서 해당 서비스 제공하도록 보조 • 주정부의 종합적, 유기적, 다학제적, 기관통합체계 통해 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조기개입 서비스 보조 • 체계 개선, 연구 및 특수교육인력 훈련, 기술적 지원, 자료제공 및 지원, 기술 개발 및 매체 서비스 등을 통해 교사와 부모에게 필요한 도구 지원 • 조기개입 및 특수교육의 효율성 평가 및 보장
대상	• Part B: 3세 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관 및 인력 • Part C: 3세 미만 장애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관 및 인력
관련법	•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tion 504: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를 배제 및 거절할 수 없다. 학교에서 일반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교육적 서비스를 장애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n.d). IDEA purpose.

<https://sites.ed.gov/idea/about-idea/#IDEA-Purpose> (2021. 10. 10. 인출).

여기서는 3~5세의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 관련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IDEA PartB Section 619의 핵심은 연방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주정부가 모든 학령 전 장애유아에게 각자에게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IEP는 교사, 학부모, 학교관리자, 관련서비스 전문가, 학생본인(적합한 경우)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여 계획된다. IEP를 통해서 장애아동은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진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의 절차와 IEP 필수요소를 기술하고, IEP 작성의 전 과정에서 장애아동 부모의 참여권과 알권리, 거부권, 재평가 요구권, 항소권 등의 필수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9〉 특수교육법(IDEA)에서 보장하는 특수교육 절차와 IEP

구분	내용
특수교육 기본절차	1. 아동찾기(Child Find System):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찾아내는 절차 (부모 의뢰 및 영유아보육교사가 부모 동의 거쳐서 검사 의뢰) 2. 아동평가: 장애가 의심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검사 실시. 검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가 별도로 검사의뢰 가능 3. IDEA 대상 장애아동 여부 판정: 검사결과로 전문가와 학부모팀이 결정 4. 장애아동 판별 후 30일 이내에 개별학교교육계획(IEP)팀 모여야 함 5. IEP 회의 소집: 학교는 회의 날짜 정하고, 부모에게 날짜, 시간, 장소, 목적, 참석자 명단, 부모 측 아동 전문가 초청 가능함 등을 알림 6. IEP 회의 후 IEP 작성: 아동의 요구 및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 포함 7. 특수교육 실시: IEP작성 직후부터 교육서비스 가능. 부모에게 사본제공 8. IEP에 기록된 연내 목표치 달성 여부 및 진전내용 부모에게 보고 9. IEP 리뷰: 최소 연 1회. 부모참여. 필요하면 IEP 목표와 서비스 내용 수정 10. 아동 재평가: 최소 매 3년. 장애아동 여부 및 교육적 요구 판별 목적
개별화된 교육계획 (IEP) 필수포함내용	• 현재 학업성취: 현재 장애로 인해 일반교육과정 참여 및 학업진전에 미치는 영향 • 연내 성취 목표: 1년 내 성취 가능한 목표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보조장비, 교육과정 수정, 교사지원 (훈련, 전문성개발) • 일반아동과 함께 참여할 수 없는 학교활동 있다면 그 불참 범위 • 주정부 학력평가 및 학군단위 평가 참여: 평가 시 필요한 조정(시간, 환경)내용; 평가참여 불가한 경우, 그 이유 및 대안 • 날짜와 시간: 서비스 시작 날짜, 제공 방법, 제공 장소, 제공 기간 • 진전 평가: 아동의 진전 평가 방식 및 부모에게 그 진전내용 알리는 방식
IEP 팀 구성원	• 아동(필요한 경우), 학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아동이나 아동의 장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 학교대표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A guide to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https://www2.ed.gov/parents/needs/spced/iepguide/index.html#process> (2021. 10. 18. 인출).

〈표 2-10〉 특수교육법(IDEA)에서 보장하는 장애아동 부모의 권리

구분	내용
부모권리	• IDEA가 보장하는 부모의 권리 및 주정부에 불만 제기하는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를 받을 권리 • 익명성 보장 및 자녀에 대한 모든 교육정보를 조사하고 평가할 권리 • 자녀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의 장애판정, 평가, 서비스 배정, FAPE(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가할 권리 • 자녀의 장애와 요구 대해 (학교 통하지 않고) 별도 교육평가 받을 권리 • 자녀의 장애판정, 평가, 서비스 배정, FAPE 내용 미리 문서로 받을 권리 • 위 내용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학교의 결정에 대한 분쟁해결 위해 IDEA체계를 이용할 권리

자료: Center for 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s. (2021). Parental rights under IDEA.

<https://www.parentcenterhub.org/parental-rights/> (2021. 10. 18. 인출)

육아지원 정책 현황

1. 가정양육 지원 정책 현황

가. 육아휴직

유급 육아휴직 관련법 최근 현황으로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연방직원 유급휴직에 관한 법’(The Federal Employee Paid Leave Act)이 있다. 이 연방법의 시행으로, 연방정부 직원들은 출산이나 입양 후에 12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받게 되었으나, 주정부 및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주정부 차원에서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법이 있는 주는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오리건, 워싱턴, 코네티컷(2022년부터 시행), 콜로라도(2024년부터 시행),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이다(KFF, 2020).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2개월 중 8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주급(weekly wage)의 60~70%를 받는데, 1주에 최고 1,357달러(주 전체 평균 급여의 100%, 약 150~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12개월 중 12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본인 주급의 60~80%(주정부 최저임금의 40배까지)를 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12개월 중 12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본인 주급의 8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주급은 903달러이다(Williams, 2021).

이처럼 각 주정부마다 유급 육아휴직 관련법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기간, 급여기준 비율, 최고 주급 액수 등은 각기 다르다.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21년 초에 바이든 대통령은 “The American Families Plan”을 통해서 ‘전국 종합 육아 휴직 및 병가 프로그램(National Comprehensive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안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에 전국적으로 직장인들에게 12주의 유급육아휴직이 가능토록 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21).

나. 육아수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는 따로 가정에 제공되는 육아수당은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저소득가정 대상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을 통한 직간접지원 및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및 환급의 형태로 주어진다. TANF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지원현황은 각 주정부에서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018년에 출판된 2015년 회계연도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연도에 매달 평균 1,630,000 가정(개인 4,170,000명)이 TANF 지원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주거, 고용, 훈련 등)를 받았고, 매달 가정별 지원금은 평균 398달러였다(Office of Family Assistance, 2018). TANF 지원 사례의 거의 절반(48.6%)이 아동만을 위한 지원 사례였고, TANF 지원금의 17%가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불되었다(Office of Family Assistance, 2018). 2020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16.6%의 지원금이 보육서비스를 위해 지불되었고, TANF 지원금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은 가정의 수는 894,137가정이고, 수혜 아동의 수는 1,586,745명이었다(Office of Family Assistance, 2021).

다. 세제혜택

1) 자녀 세액 공제 (Child Tax Credit)

2020년에 자녀 1인당 2,000달러 일괄 공제되던 액수를 상향조정하여서, 2021년에는 6세 미만 자녀 3,600달러(6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1인당 3,000달러)까지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가정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세금환급액을 2021년 6월 15일부터 매달 선급금 형식으로 각 가정에 환급하는데, 각 가구는 매월 250~300달러(6~17세 아동 1인당 250달러, 6세 미만 아동 1인당 300달러)까지 한도 내에서 환급금을 선급받게 된다(Reinicke, 2021). 또한 2022년에 2021년분의 세금보고를 할 때에 나머지 경비 50%를 신청할 수 있다(IRS, 2021a).

2)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2021년 자료(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1b)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 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만 명의 2019년 세금보고자가 630억 달러의 연방세를 2020년에 환급받았고, 평균 환급액은 2,476달러였다.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소득세(federal income tax)와 별도로 주정부에 내야 하는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도 있는데, 주정부에 따라 주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다. 주 소득세 환급액은 연방세 환급액의 일정비율로 정한 주가 대부분이다. 환급률은 낮게는 3%(몬타나주)부터 높게는 45%(메릴랜드주)까지 다양하다. 2021년의 경우, 오레곤주는 일반가정(9%)보다 3세미만 유아가 있는 가정(12%)에 높은 환급률을 적용한다. 위스콘신주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서만 환급을 해 주며, 환급율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1자녀: 4%, 2자녀: 11%, 3자녀: 34%). 예외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별도로 주정부가 정한 소득기준 별로 환급률이 차등 계산된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1b).

3) 자녀 및 부양자 양육 세액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바이든 정부의 2021 정책안에서는 자녀 및 부양가족 지원 경비 공제 폭을 확대하였다. 가구 당 연수입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가구의 경우,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양육비(종일 돌봄, 방과 후 돌봄 등의 비용)의 4,000달러까지, 2인 이상인 경우 8,000달러 내에서 돌봄 경비의 50% 까지 세금 환급 가능하며, 수입이 125,000달러 이상 400,000달러 미만일 경우는 부분적으로 해당 경비에 대해 세금환급이 가능하다(The White House, 2021).

2. ECEC 서비스 관련 정책 현황

가. 육아발전지원금(CCDBG)법에 따른 보육 현황

1) 기관

보육기관 관리는 기관에 대한 신규 인가 및 인가 갱신에 관한 주정부의 규정을 통해 관리된다. 관리규정은 주마다 다르다. 전국 보육기관 인가 법령 데이터베이스(National Database of Child Care Licensing Regulations, <https://childcareta.acf.hhs.gov/licensing>)에서는 각 주의 보육기관, 가정보육, 학령아동 대상 프로그램, 영아 프로그램 등의 인준규정 내용과 담당부서 연락처와 웹링크를 제공하며, 각 주의 해당 내용을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전국 각 주정부의 보육기관 인가 규정에 대한 연구(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National Center on Early Childhood Quality Assurance, 2020) 보고서 등을 통해서, 미국의 보육기관 현황과 인가 관련 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들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전역의 인가된 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2018~2019년까지 각 주정부로부터 확인된 보육기관 관련 규정을 토대로 분석한 최근 결과이다.

전국의 50개 주정부와 미국령 사모아, 컬럼비아구를 포함한 52개 자치주 중 대부분은 보육센터(52개주, 100%), 소규모 가정보육(50개주, 96%), 대규모가정보육(39개주, 75%)에 대한 규정이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10).

〈표 3-1〉 전국의 인준된 보육/유아교육 시설 및 수용가능 원아의 수

	보육센터	가정보육(소)	가정보육(대)	기타	총
시설 수	109,436개소	83,942개소	37,278개소	5,741개소	248,217개소
수용가능 원아 수	8,714,155명	767,760명	527,637명	477,671명	10,487,223명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2017 child care licensing study. <https://nara.memberclicks.net/assets/docs/ChildCareLicensingStudies/2017CCStudy/NARA%202017%20Licensing%20Survey%20Report%20FINALrev.pdf> (2021. 9. 20. 인출)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설 인가 전 그리고 인가 갱신 전에 기관 점검 (inspection)을 한다. 정기 점검은 불시에 하며, 90%의 주정부들은 갱신 전에 이행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compliance inspections)을 하고,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정부들은 이러한 이행 준수사항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한다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57).

〈표 3-2〉 보육/유아교육 시설 인가 및 갱신 시 점검 주기

단위: 개소

시설 구분		보육센터	가정보육(소)	가정보육(대)
인가규정이 있는 주정부의 수		52	50	39
인가 후 점검 주기	연3회 이상	4	4	3
	연3회	3	2	1
	연2회	16	12	12
	1년 주기	27	24	20
	2년 주기	2	2	1
	3년 주기	1	1	1
	비정기점검	0	0	0
	기타	10	7	5
인가 후 갱신 주기	1년 주기	21	16	16
	2년 주기	15	14	12
	3년 주기	7	6	5
	평생인가	8	7	5
	기타	2	4	2
이행 준수사항 총 점검 주기 (full compliance review)	연3회 이상	1	1	0
	연3회	1	1	1
	연2회	4	4	4
	1년 주기	29	23	21
	2년 주기	6	7	6
	3년 주기	4	3	2
	3년에 1회 미만	1	1	1
	점검 무	1	1	0
	기타	7	7	4

자료: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2017 child care licensing study.
<https://nara.memberclicks.net/assets/docs/ChildCareLicensingStudies/2017CCStudy/NARA%202017%20Licensing%20Survey%20Report%20FINALrev.pdf> (2021. 9. 20. 인출)

각 주정부에서 수집된 보육시설 인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자료들은 종사자
 수급 평가, 인가 점검 및 기관의 이행사항 사후감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해당
 자료들은 주정부 내 다른 산하기관의 사업들과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많
 은 주에서 보육비 보조 지급 시스템(child care subsidy payment system,
 54%의 주에서 연계), 질 관리 체계(QRIS, 37%), 신원조회 서비스 및 등록
 (background check and registry, 35%), 보육기관 정보제공 서비스(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23%),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
 23%), 보육인력의 전문성개발 내용 등록체계(profess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 registry, 19%),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 [예, TANF], 15%) 등의 주정부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보육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84).

가정에서 보육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는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육기관 점검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정부는, 학부모와 대중이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전체 보고서(52%) 혹은 요약본(31%)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105).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주정부는 60%이며, 나머지 40%의 주정부는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112). 대부분의 주정부(92%)에서는 CCDF기금과 기타 수입원(예, 인가비용, TANF 등)을 사용하여 보육시설 인가 점검 인력(child care licensing staff)을 고용하고 훈련을 제공한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141).

2) 보육인력

대부분의 주정부는 연령기준(원장: 21세 이상, 주교사: 18세 이상, 보조교사: 16세 이상)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보육인력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다.

〈표 3-3〉 보육종사자의 역할, 사전교육, 현직교육 관련 규정이 있는 주정부의 수

기관 종사자 역할	역할 규정	고교 졸업 혹은 동등학력	사전교육 (예, 관련과목 이수 여부)	현직교육 (예, 연간 훈련시간)
원장	51	47	49	48
주교사	19	16	19	17
교사	51	34	41	49
부교사/보조교사	30	15	21	27
보조(aide)	19	5	10	13

자료: National Center on Early Childhood Quality Assurance. (2020, March). Trends in child care center licensing requirements and policies for 2017: Research brief 1.
<https://childcareta.acf.hhs.gov/resource/trends-child-care-center-licensing-requirements-and-policies-2017-research-brief-1> (2021. 9. 21. 인출)

일례로 뉴욕주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보육기관을 나누고 각 기관종류 별로 인가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3-1] 뉴욕주 보육기관 인가규정: CCDBG법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시

Division of Child Care Services

Policies

Public Presentations

Aggregate Data

Letters to Providers

CCDBG Background Checks

Lead Testing in Drinking Water Program

Child Care Complaints

In NYS (toll-free):
800-732-5207

In NYC:
311 or 800-732-5207

Contact Us

Translate this page

List of Regulations

- Part 413 - Child Day Care Definitions, Enforcement and Hearings**
 English: [Word](#) [PDF](#) - Child Day Care Definitions, Enforcement and Hearings
 Spanish: [Word](#) [PDF](#) - Definiciones, cumplimiento y audiencias del cuidado infantil diurno
- Part 414 - School-Age Child Care**
 English: [Word](#) [PDF](#) - School-Age Child Care
 Spanish: [Word](#) [PDF](#) - Cuidado de Niños en Edad Escolar
- Part 415 - Child Care Services (child care subsidy, legally exempt providers)**
 English: [Word](#) [PDF](#) - Child Care Services (child care subsidy, legally exempt providers)
 Spanish: [Word](#) [PDF](#) - Servicios de Cuidado Infantil (cuidado infantil subsidiado, proveedores legalmente exentos)
- Part 416 - Group Family Day Care Homes**
 English: [Word](#) [PDF](#) - Group Family Day Care Homes
 Spanish: [Word](#) [PDF](#) - Hogares de Cuidado Diurno Familiar Grupal
- Part 417 - Family Day Care Homes**
 English: [Word](#) [PDF](#) - Family Day Care Homes
 Spanish: [Word](#) [PDF](#) - Hogares de Cuidado Diurno Familiar
- Part 418-1 - Child Day Care Centers**
 English: [Word](#) [PDF](#) - Child Day Care Centers
 Spanish: [Word](#) [PDF](#) - Centros de Cuidado Diurno Infantil
- Part 418-2 - Small Day Care Centers**
 English: [Word](#) [PDF](#) - Small Day Care Centers

자료: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n.d.). Child care regulations and policies.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regulations/> (2021. 10. 10. 인출)

<표 3-4> 뉴욕주의 보육기관 관리 기준: 연령별 성인-아동 비율 및 최대 아동 수

	성인-아동 비율	최대 아동 수
6주 미만	1:3	6
6주-18개월	1:4	8
18개월-36개월	1:5	12
만 3세	1:7	18
만 4세	1:8	21
만 5세	1:9	24

자료: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ies. (2021). New York State child day care regulations. <https://www.ocfs.ny.gov/programs/childcare/regulations/418-1-DCC.pdf> (2021. 10. 10. 인출)

〈표 3-5〉 뉴욕주의 보육기관 관리 기준: 보육인력 자격요건

역할	학력	경력
원장 (이 중 한 가지)	4년제 학위 및 유아교육/아동발달 12학점	과 1년 보육기관 교사경력 및 1년 교사관리 경력
	뉴욕주 원장 자격증	과 1년 보육기관 교사경력 및 1년 교사관리 경력
	유아교육/아동발달 2년제 학위 및 4년제 학위과정 혹은 뉴욕주 원장 자격증 과정 계획	과 2년 보육기관 교사경력 및 2년 교사관리 경력
	CDA 자격증 및 4년제 학위과정 혹은 뉴욕주 원장 자격증 과정 계획	과 2년 보육기관 교사경력 및 2년 교사관리 경력
3~4세 반 교사 (이 중 한 가지)	유아교육/아동발달 2년제 학위	
	CDA 자격증	과 1년 보육경험
	유아교육/아동발달 9학점 및 CDA 과정, 유아교육/아동발달 2년제 학위과정 계획	과 2년 보육경험
0~3세 반 교사 (이 중 한 가지)	유아교육/아동발달 2년제 학위	와 1년 영유아 보육경험
	영유아보육 자격증 혹은 영유아 CDA 자격증	과 2년 보육경험
	CDA 자격증	과 2년 보육경험 (1년-영유아)
	유아교육/아동발달 9학점 및 영유아보육 자격증 과정, 영유아 CDA 과정, 유아교육/아동발달 2년제 학위과정 계획	과 2년 보육경험 (1년-영유아)
5세 이상 반 교사 (이 중 한 가지)	유아교육/아동발달/초등교육/체육교육 2년제 학위	
	학령 보육 자격증	과 1년 교육경험(13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장/검정고시	와 2년 교육경험(13세 미만)
보조교사	고등학교 졸업장/검정고시	나 1년 교육경험(13세 미만)

자료: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ies. (2021). New York State child day care regulations.
<https://www.ocfs.ny.gov/programs/childcare/regulations/418-1-DCC.pdf> (2021. 10. 10. 인출)

3) 질 관리

2019년 현재 50개의 주정부 중 41개의 주와 컬럼비아구에서 질 관리체계(Quality Rating Improvement System: QRIS)를 운영 중이다. 플로리다의 경우, 군·읍 수준의 질 관리체계를 포함해 1개 이상의 질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미국 전역에서 44개의 질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Quality

Compendium, n.d.). 44개의 질 관리체계 중 43개가 기관 관찰을 통해서 질을 측정하는데, 이 중 36개(86%)는 한 개 이상의 관찰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찰도구는 환경평가도구(The Environment Rating Scales: ERS, 32개[74.4%] QRIS에서 사용 중)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실평가척도체계(The Classroom Assessment Scoring System: CLASS, 22개[51.2%] QRIS에서 사용 중)이다(Quality Compendium, n.d.).

40개 주의 질 관리체계에서 교육과정 관련 지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육과정 관련 지표는 조기학습기준(early learning guidelines, 65%), 교육과정 개별화를 위한 평가결과 사용(42%),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 필수(40%) 등이었다(Quality Compendium, n.d.). 2019년 기준, 각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 관리체계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표 3-6〉 각 주의 질 관리 체계(QRIS)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

지표	기관보육(N=43)	가정보육(N=42)
종사자 자격요건 및 전문성개발 훈련	93%	90%
환경	91%	90%
기관 운영관리 및 리더십	84%	79%
가정과의 연계 및 협력	81%	74%
상호작용	81%	71%
아동 평가	81%	76%
교육과정	79%	76%
건강과 안전	77%	69%
특수아동에 대한 조항	65%	67%
교사-아동 비율 및 아동 수(group size)	63%	55%
지역사회와 연계	56%	50%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51%	43%
지속적인 질 향상	51%	50%
기타	37%	26%
인준(accreditation)	37%	31%
종사자 처우 및 연금혜택	35%	-

자료: Quality Compendium. (n.d.). Types of indicators: What are the most common types of indicators included in QRIS? <https://qualitycompendium.org/top-ten/types-of-indicators> (2021. 9. 25. 인출)

전문성개발 지표로는 전문단체 회원(13%), 전문성 개발계획(31%), 전문성 훈련(42%)등이 포함되었고, 전문성 훈련 내용은 각 질 관리체계마다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전문성 개발 지표에 포함되는 전문성 훈련 내용은 아동 발달과 건강안전(44%), 환경평가도구(42%), 교육과정(37%), 발달에 적합한 실제(35%), 사회정서발달(33%), 특수교육(30%) 등이다. 교육과정 지표로서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과 3~4세 대상 프로그램에서 각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육과정은 창의적 교육과정(Creative Curriculum, 각 26%와 30%), 하이 스코프(High Scope Curriculum, 각 19%와 23%)였다. 각 주에서는 질 관리체계에 참가하여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하는 ECEC 기관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그 예로는 품질 상(quality awards)·보너스(55%)가 주를 이루었는데,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학금(18%), 종사자 월급 보조(18%) 등을 포함한다(Quality Compendium, n.d.).

나. 헤드스타트 법에 따른 보육 현황

1) 기관

헤드스타트 법과 수행기준에 따르겠다고 지원서를 내고, 경쟁심사를 거쳐서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지원금(Head Start Grants)을 받는 공사립기관을 헤드스타트 수혜기관(Head Start Grantees)이라고 부른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헤드스타트 유아학교(Head Start Preschool),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이주학생 대상 및 계절제 헤드스타트(Migrant and Seasonal Head Start)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020년 출간된 전국 주정부들의 보육시설 인가 현황에 대한 보고서(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에 의하면, 2017년 12월 현재, 50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 및 워싱턴 특별자치구 중 5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정부(47개, 90.4%)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들에 대해 인가받도록 정하고 있다. 18개 주(34.6%)에서는 모든 헤드스타트 센터가 인가받도록 정하고 있고, 19개 주(55.8%)에서는 일부 헤드스타트 센터가 인가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헤드스타트 센터가 공립

학교(7%) 혹은 사립초등학교(43%) 내에 있고, 주정부의 인가 면제 대상(43%)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21).

주정부(31개 주가 응답한 자료)로부터 수집된 헤드스타트 시설 인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데, 이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주정부의 보육시설인가 데이터베이스에 헤드스타트가 없는 경우(12개 주)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자료수집을 따로 하는 경우(6개 주)도 있기 때문이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p. 23~24). 이 자료에 의하면 1,900만 명 이상의 0~5세 아동이 연방정부의 빈곤기준소득 이하의 가정환경에 있으며(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19), 주 내 헤드스타트 시설의 인가율에 대해서는 75%가 인가받은 기관이라고 응답한 주(50%), 50~75%가 인가된 주(8%), 25~49%가 인가된 주(6%), 25% 미만인 주(6%), 정보가 없다고 보고한 주(30%)까지 다양하다(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p. 26).

모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매년 프로그램 운영보고서(Program 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해당 년도에 등록한 모든 아동 및 임신 여성의 수 등이 포함된다(중도 이탈자 포함). 연방 헤드스타트 사무소에서 각 프로그램이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각 기관의 운영정보를 수집한다. 2019년 발간된 전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보고서(Office of Head Start, 2019)에 의하면, 각 프로그램 별로 지원된 자리의 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3-7〉 헤드스타트(Head Start) 기관별 지원된 자리 수

	헤드스타트 지원으로 등록한 자리 수	헤드스타트 지원으로 등록한 자리 비율
기관 내 프로그램 (Center-based)	793,492	88.7%
가정 내 프로그램 (Home-based)	69,757	7.8%
가정 보육 (Family Child Care)	9,551	1.1%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Locally Designed)	9,336	1.0%
임신 여성 (Total Funded Pregnant Women)	6,421	0.7%
총	894,6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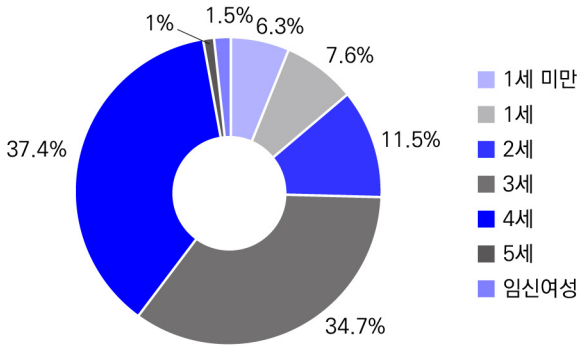
자료: Office of Head Start. (2019). Services snapshot: National all programs (2018-2019).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service-snapshot-all-programs-2018-2019.pdf> (2021. 9. 9. 인출)

2018~2019년의 경우, 헤드스타트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여성의 수는 중간에 나가거나 기타 이유로 빈자리에 들어온 자를 포함하여 총 1,031,773명(100%)이고, 수혜 대상별 비율은 1세 미만 영아가 6.3%, 1세가 7.6%, 2세가 11.5%, 3세가 34.7%, 4세가 37.4%, 5세가 1%, 임신여성이 1.5%이며, 전체 아동 중 홀리스 아동(58,773명)은 5.7%, 위탁 아동(35,778명)은 3.5%, 특수아(136,717명)는 13.3%를 차지하였고, 2년째 등록하는 아동(29.4%)과 3년째 등록하는 아동(8%)은 3분의 1 이상이다(Office of Head Start, 2019). 인종별로는 흑인(28.6%), 백인(23.3%, 남미계 백인:20.9%), 혼혈인종(4.9%),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3%), 아시아인(2.1%)의 순이었다(Office of Head Start, 2019, p. 2).

[그림 3-2] 헤드스타트 수혜 대상별 비율

단위: %



자료: Office of Head Start. (2019). Services snapshot: National all programs (2018-2019).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service-snapshot-all-programs-2018-2019.pdf> (2021. 9. 9. 인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등록된 아동과 가정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등록 가정에서 이용한 서비스는 부모교육(47.5%), 건강교육(39.6%), 응급 및 위기 개입(18.2%), 성인교육(9.2%), 정신건강(8.7%), 주거지원(7.3%), 직업훈련(6.7%), 아동 학대 및 방임(6.3%), 영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훈련(4.2%), 약물중독예방(3.6%) 등의 순이었다 (Office of Head Start, 2019, p. 4).

헤드스타트 수행기준 2016 개정판(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6)에서는 헤드스타트 센터들이 각 지역사회와 가정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시간을 연장하도록 개정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헤드스타트 센터에 등록된 3~4세 아동들에게는 연간 최소한 1,020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2021년 8월 1일까지 이행되어야 함), 조기헤드스타트 센터는 연간 최소한 1,380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연장된 시간으로 인해 일과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일과계획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아학습지식센터(Early Childhood Learning and Knowledge Center: ECLKC)를 통해 웨비나(webinar)를 실시하였다.

2) 보육 인력

2016년 이후에 고용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및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원장은 최소한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하며, 직원 감독, 재무, 운영관리 경험자여야 한다(HSPPS 1302.91). 의무근속연한 조항으로는, 헤드스타트 지원을 통해 학위를 받은 교사는 학위수여 이후 최소 3년 이상 헤드스타트 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Public Law 110-134).

헤드스타트 기관의 교사 중 50% 이상은 유아교육 혹은 관련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이어야 하며, 모든 헤드스타트 교육전문가(education coordinator)는 유아교육 혹은 관련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모든 헤드스타트 보조교사는 적어도 CDA(Child Development Associate) 자격 소지자 혹은 2년 내에 CDA 자격을 소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Public Law 110-134).

조기헤드스타트 기관에 근무하는 보육인력(Center-Based Staff) 중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교사는 최소한 CDA(Child Development Associate) 이상의 자격, 아동발달 수업 이수 및 1년 내로 영유아발달에 초점을 맞춘 아동발달 수업 혹은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Public Law 110-134). 가정방문 전문인력(Home Visiting Staff)은 0~3세 아동발달, 부모의 장점에 초점을 맞춘 부모교육(strength-based parent education) 및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아동의 최초의 교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Public Law 110-134).

그러나 이주민과 계절노동자 가정 대상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 2017년에 수집된 자료를 보고한 최근 보고서(Caswell et al., 2019)에 의하면, 헤드스타트 보육인력 중 교사와 보조교사의 학력은 각각 고졸미만(5%, 10%), 고졸(23.9%, 32.3%), 대학 학점 일부 이수(16.4%, 30.9%), 2년제 학위(32%, 14%), 4년제 학위(19.9%, 10.9%), 석사 이상 학위(2.8%, 1.6%)의 분포를 보였다(Caswell et al., 2019, p. 253, 296). 헤드스타트 교사와 보조교사의 세전 연봉은 각각 9,999달러 이하(6.4%, 13.2%), 10,000~14,999달러(25.5%, 36.6%), 15,000~19,999달러(23.9%, 24.2%), 20,000~24,999

달러(28.4%, 14.6%), 25,000달러 이상(15.8%, 11.5%)의 분포를 보였다 (Caswell et al., 2019, p. 273, 317). 이에 비해서, 2017~2018년 초중고 교사의 평균 기본 연봉은 57,900달러였고,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 초봉도 42,800달러였다(Irwin et al., 2021, p. 16)

〈표 3-7〉 이주민 대상 헤드스타트 기관 교사와 보조교사의 학력과 세전 연봉

단위: %

구분		교사	보조교사
학력	고졸미만	5.0	10.0
	고졸	23.9	32.3
	대학 학점 일부 이수	16.4	30.9
	2년제 학위	32.0	14.0
	4년제 학위	19.9	10.9
	석사 이상 학위	2.8	1.6
	계	100.0	100.0
연봉	\$9,999이하	6.4	13.2
	\$10,000-\$14,999	25.5	36.6
	\$15,000-\$19,999	23.9	24.2
	\$20,000-\$24,999	28.4	14.6
	\$25,000이상	15.8	11.5
	계	100.0	100.0

주: 각 항목별 비율은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반올림된 수치이므로, 그 합이 100%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rwin, et al. (2021). Report on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21 (NCES 2021-144).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pubsearch/pubsinfo.asp?pubid=2021144> (2021. 9. 25. 인출)

헤드스타트 교사 자격요건은 전보다 강화되고 있으나 현실은 아직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 있으며, 교사처우는 강화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헤드스타트기관은 100% 연방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헤드스타트 지원금을 신청한 보육기관 중 선택된 기관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 배당한 헤드스타트 아동 숫자만큼 지원금을 받는 시스템이기에, 각 기관마다 보육인력 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1년 증액된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지원금은 이러한 교사처우 문제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헤드스타트 기

관에서는 보육인력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cost-of-living adjustment: COLA) 2020년 기본 지원금에서 최소한 1.22% 증액된 COLA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인력의 봉급을 최소한 1.22% 이상 인상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해야 한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1).

3) 질 관리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 기준(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는 헤드스타트 및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들의 질 관리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세 가지 관리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행 기준(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에 따라서 각 헤드스타트 기관들이 자료를 수집, 활용, 통합,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의 각 헤드스타트 기관들이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훈련 비디오와 온라인학습모듈 등의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는 Early Childhood Learning and Knowledge Center(ECLKC)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다(ECLKC, n.d.b)⁷⁾. 교육자료 및 훈련 주제는 ‘지속적인 아동평가를 위한 계획, 자료수집 및 활용(훈련 비디오), 교사 관리감독,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질 개선, 자료와 평가, 양질의 자료란 무엇인가’ 등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자료제공을 통해, 각각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평가, 교사관리감독,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각 헤드스타트 기관은 자료관리 절차를 확립해야 하고, 자료수집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요구조사, 연방기준 준수여부, 기관의 목표달성 등에 대한 진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국의 각 헤드스타트 기관 중 무작위로 선택된 기관을 방문하여 CLASS 관찰도구를 사용하여 관찰한 데이터를 통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

7) <https://eclkc.ohs.acf.hhs.gov/data-ongoing-monitoring/learning-module/digging-data-responsive-programs>

호작용의 질을 평가한다. CLASS 관찰도구는 3가지 영역(정서적 지원, 교실 조직, 교육적 지원)의 10개 부문에 있어서 교사-아동 상호작용의 질을 7점 척도로 측정한다. 헤드스타트·ECLKC에서는 해마다 CLASS관찰 보고서를 펴내어 질 평가 결과를 공유한다. 2020년에는 COVID로 인해 78개의 헤드스타트 기관만이 방문관찰 평가를 받았다(ECLKC, n.d.a). 2020년의 조사 결과, 정서적 지원(M=6.03) 및 교실 조직(M=5.78) 면의 점수가 교육적 지원(M=2.94) 점수보다 높았다.

셋째, 헤드스타트 법의 Sec. 640(a)(5) 조항에 근거하여서, 헤드스타트 기관들에게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금(quality improvement funds)을 배분하고,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용처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교사처우 개선, 양질의 교사 채용·유지, 교사교육(교사자격증 취득) 및 전문성 개발 지원, 교사-아동 비율 낮추기 위한 추가교사 채용 등의 항목이 질 향상을 위한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에 해당된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0).

다. 주립 유아학교 현황

미국의 3~4세 학령전 유아 대상 정책 중 현재 가장 언급할 만한 정책은 주립 유아학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협력하여 전국의 3~4세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될 것이지만, 2021년 현재는 각각의 주정부 차원에서 주립 유아학교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주립 유아학교란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지시 및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립 유아학교는 State preschool, State pre-K, universal preK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주정부에 따라 저소득층 3~4세 아동 대상 혹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체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립 유아학교의 현황을 기술한다.

1) 기관

주별로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여부와 등록률은 각 주의 정책 및 재정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조은경, 2020). 2021년 주립 유아학교 보고서(Friedman-Krauss et al., 2021)에 따르면, 2019~2020년 현재, 44개 주와 컬럼비아구에서 62개의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개 주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5개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27개는 소득제한이 없다. 전국의 4세아의 34%, 3세아의 6.3%가 주립 유아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다. 4세아의 50% 이상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주는 8개, 70% 이상은 5개 주이며, 3세아의 50% 이상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주는 단 2개(주정부, 컬럼비아구)에 불과하다. 컬럼비아구의 경우, 3~4세 아동 누구나 공립학교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3세아의 73%, 4세아의 84%가 무상교육을 받는다. 아동 1인당 주정부의 평균지출액은 5,499달러이며, 연방정부 지원액까지 합치면 6,329달러이다. 한편, 공립학교의 아동 1인당 지출액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원액을 합쳐서 15,513달러로, 유아학교 아동 1인당 지출액의 두 배 이상이다(Friedman-Krauss et al., 2021).

2) 교육인력

주립 유아학교 교육인력 관련 정책은 교사 자격요건으로 대졸학력과 유아 교육(혹은 아동발달 등 관련학) 전공을 요구하는지, 보조교사 자격요건으로 최소한 CDA 자격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자료는 Friedman-Krauss et al.(2021)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표 3-8〉 주립 유아학교 교사 자격

교사자격 관련조항	2019~2020 프로그램
교사 대졸학력 요함	37 (59.7%)
교사 대졸학력 요함, pre-K 전문훈련은 요구 안 함	7 (11.3%)
교사 pre-K 전문훈련 요함	50 (80.6%)
교사 pre-K 전문훈련 요함, 대졸학력은 요구 안 함	18 (16.1%)
교사 대졸학력과 pre-K 전문훈련 요함	31 (50%)
교사 대졸학력 및 pre-K 전문훈련 요구 안 함	6 (9.6%)
보조교사 CDA자격 요함	19 (30.6%)
교사 대졸학력, pre-K 전문훈련, 보조교사 CDA 요함	11 (17.7%)
교사 대졸학력, pre-K 전문훈련, 보조교사 CDA 중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음	5 (8.1%)

주: N=62

자료: Friedman-Krauss et al. (2021). The State of Preschool 2020: State Preschool Yearbook. New Brunswick, NJ: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3) 질 관리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의 질 관리체계는 주마다 각기 다르다. 미국 유아 교육연구소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음의 10가지 항목과 그 기준을 정하여서 해마다 각 주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고 보고서(예, Friedman-Krauss et al., 2021)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에는, 각 주정부 정책을 각각 나열하고, 10가지 항목 중 질적인 기준에 도달한 항목과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항목을 밝힌다. 이러한 정책비교는 각 주정부가 해당 요소를 검토 및 개선하도록 하는 간접효과가 있다(조은경, 2020). 그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 학습과 발달에 대한 기준 확립
2. 교육과정 지원
3. 대졸 학력 교사
4. 유아교육관련 전공자
5. CDA이상의 자격을 갖춘 보조교사
6. 연간 15시간 이상의 교원 현직교육

-
7. 학급당 정원 20명 이내
 8. 교사 대 아동 비율 1:10 이하
 9. 아동 기본 건강검진
 10. 지속적인 질 개선 시스템

이 중, “지속적인 질 개선 시스템” 항목은 (1) 학급의 질(classroom quality)에 대한 자료수집 시스템이 있으며,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자료수집을 하도록 요하는 정책이 있고, (2) 수집된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프로그램과 주정부 차원의 정책 및 실재에 적용하도록 요하는 정책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조은경, 2020, p. 68). 이러한 10개 항목의 정책기준에 모두 맞춘 프로그램은 2020년 현재 앨라배마, 하와이,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로드아일랜드의 6개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라.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에 따른 교육현황

1) 기관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교육체제에서 다루어지는 유아교육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서의 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일부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만, 유치원(Kindergarten) 교육은 전국적인 의무교육이 아니다. 즉, 대부분 주에서 학군 내 공립학교를 통해 유치원 교육이 제공되지만, 주정부에 따라 의무교육인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으며, 반일제인 주가 있고, 종일제인 주가 있다. 아래 표는 각 주정부의 유치원 관련 정책 현황을 보여준다.

〈표 3-9〉 유치원 관련 주정부 정책

주	정책현황
17개 주 + 컬럼비아구	유치원 의무교육 (운영시간은 다양)
13개 주 + 컬럼비아구	종일제 유치원 운영
18개 주 + 컬럼비아구	유아학교에서 유치원으로의 연계계획이 문서화됨
42개 주 + 컬럼비아구	유치원 학생 대상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 있음
29개 주 + 컬럼비아구	유치원 아동 대상 유급 정책 있음
42개 주 + 컬럼비아구	사회정서학습 강조함, 입학 시 평가, 교사 훈련 조항 등 유치원 관련 규정 있음

자료: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8). State kindergarten-through-third-grade policies: Does the state require the district to offer kindergarten and if so, full or half day? What exemptions exist for districts? <http://ecs.force.com/mbdata/MBQuest2RTanw?rep=KK3Q1805> (2021. 9. 25. 인출)

앞서 2장에서 Title I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Title 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군에서는 반일제 유치원 프로그램을 종일제로 연장하여 제공할 수 있고, 유치원 학급을 신설하여 교사 채용을 하고, 보상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군, 학교, 지역사회의 유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Title I 학교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을 보면, 2015년의 경우, 각각 타입 별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배분되었다.

- 기본 지원금(Basic Grants): Title I 지원금의 45%
 - 집중 지원금(Concentration Grants): Title I 지원금의 9%
 - 선택적 지원금(Targeted Grants): Title I 지원금의 23%
 - 교육재정 인센티브 지원금(Educational Finance Incentives Grants): Title I 지원금의 45%
- (Snyder et al., 2019, pp. 14~15).

2017~2018년의 경우, 전국 학군의 95.8%가 기본 지원금을 받았고, 집중 지원금을 받은 학군은 56.8%, 선택적 지원금과 교육재정 인센티브 지원금을 받은 학군은 91.7%에 달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해당 학군 내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비율이 40% 이상인 학교에 지원금이 배당된다. 2017~2018년의 경우, 학생 중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51~75%인 학교는 23.1%, 76%~100%인 학교는 전체의 34.9%에 달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a). 지원금이 학교에 배당되면 학교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Title I 대상 학생 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95%)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Snyder et al., 2019, p. xi). 각 학군별로 지급되는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 1인당 Title1 지원규모는 평균 1,227달러이다. 그러나 학군이 위치한 지역, 학군의 빈곤율, 학군의 학생 수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2015년의 경우, 대도시(1,466달러)와 농어촌지역(rural areas)(1,313달러), 빈곤율 상위학군(1,381달러)과 하위학군(1,023달러), 학생수가 3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군(1,442달러)과 5,000~9,999명인 중소규모학군(1,107달러) 사이에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었다(Snyder et al., 2019). 2015년의 경우, 전국의 5~17세 학생 중 21.4%가 Title I 지원 대상 학생이었으나, 지역별로 그 분포는 큰 차이가 있었고(푸에르토리코: 55.9%; 컬럼비아구: 32.5%, 뉴햄프셔주: 9.9%), Title I 지원 대상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전국평균 1,227달러였으나, 주별로(아이다호주: 984달러, 버몬트주: 2,590달러), 지역특성에 따라, 학군의 빈곤율에 따라 (빈곤율 상위75% 학군: 1,395달러, 빈곤율 하위 25% 학군: 921달러)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Snyder et al., 2019).

앞서 2장에서 Title III 정책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 Title III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학습자(English Learners: ELs)와 이민자 아동 등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2018년 영어학습자에 대한 보고서(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2021)에 의하면, 2017~2018년의 경우, 영어학습자의 수는 500만 명 이상이었고, 그 비율은 전체 학생 중 12% 이상이며, 캘리포니아주는 20%이상이었다. Title III의 지원을 받는 언어학습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중 약 14%의 학생만이 영어숙련도 기준에 도달했고, 27%는 진전이 있었고, 34%는 기준미달에 진전도 없었다. 일반학생들보다 영어학습자들은 언어(50.5% 대

23.9%), 수학(45.2% 대 25.4%)과 과학(48% 대 17.1%) 표준평가에서 학력 기준(proficiency level)에 도달한 학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2021).

이전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ESSA에서 새로 포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관리하는 유아학교 개발 지원금(Preschool Development Grants: PDG)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는 PDG지원금을 통해 각 주정부가 0-5세(Birth-5, B-5)아동 대상 유아교육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및 질 향상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모든 학생의 성공법, 섹션 9212(ESSA section 9212, PL 114-95)를 통해서, 연방정부는 각 주의 저소득층 아동이 유치원 입학 준비 및 학교에서 학습준비가 되도록 돕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연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돕고자 주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각 주에서 제공되는 유아교육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요구조사를 하도록 일차지원금(initial grants)을 제공하고, 일차지원금을 받은 주정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지원하는 이차지원금(renewal grants)을 제공하였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p. 12). 2016년 당시까지 18개 주정부가 PDG지원금을 받았다. 현재는 PDG B-5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PDG B-5의 주목적은 각 주정부가 해당 주의 0~5세 유아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한 후, 부모들에게 다양한 ECEC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공사립기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ECEC서비스(기관보육, 가정보육, 헤드스타트, 주립유아학교, 헤드스타트, 조기헤드스타트, 가정방문프로그램)를 통해 복합서비스전달체계(mixed delivery system)가 확 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d.a). 2019년에는 46개 주정부가 초기지원금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6개 주정부가 일차지원금을 받고, 23개 주정부가 이차지원금을 받았다.

2) 교육인력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혹은 대학원 과정)에서 유아교육 혹은 초등교육 전공을 하고 주정부의 교사자격증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2020년 교육통계 보고에 의하면, 2017~2018년도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의 최종학력은 대졸미만(2.1%), 대졸(42.6%), 석사(47.1%), 교육전문가(7.6%), 박사(0.7%)의 비율로 55.4%의 초등학교 교사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였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a). 대부분의 교사는 일반 교사자격증 소지자(91.3%)이며, 수습(Probationary) 교사자격증(2.9%), 임시(Provisional/Temporary) 교사자격증(3.4%), 면제/긴급(Waiver/Emergency)(0.7%), 자격증 미소지자(1.7%)였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a).

교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정부의 정책은 양질의 교육인력 양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교사교육과 현장실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고 주정부 정책은 규제완화 경향을 보였다. 각 주의 예비교사교육정책 트렌드를 보고한 2021년 자료(Putman & Walsh, 2021)에 의하면, 예비교사들의 교사교육기관 입학에 필요한 기초학력평가기준(예, SAT, GRE, Praxis 시험의 문해, 작문, 수학 점수)을 적용하는 주는 2017년에 비해 25개주(50%)에서 15개주(30%)로 감소하였고; 유색인종 학생 모집 정책이 있는 주의 수는 19개주에서 25개주(50%)로 증가하였고; 약 절반 가까이 되는 주(24개)가 예비유아교사의 조기문해 교육 지식을 요구하며;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주는 16개(32%)이다.

교사가 된 후에는 현직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직교육 시간은 주정부 별로 각기 다르다. 뉴햄프셔주의 경우에는 3년마다 교사자격증을 갱신해야 하며, 자격증을 갱신하려면 전문성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고, 3년 내에 75시간의 현직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30시간은 교사자격증 분야(유아교육, 특수교육, 이중언어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고, 45시간은 교사역량개발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New Hampshire Department of Education, n.d.).

교사연봉은, 2017~2018년 기준, 1년 미만 초임교사의 평균연봉 42,800달러부터 30년 이상 경력교사의 평균연봉 72,500달러까지 분포되어 있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a). 초등학교의 교사 대 학생 비율은 평균 1:16.2이나, 특수학교의 경우 1:7.3, 학생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1:12.7, 학생수가 1,5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1:18.8이다(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b).

3) 질 관리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2018)에 의하면,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육, 양질의 교사, 유아학교·헤드스타트에서 유치원으로의 연계, 적절한 평가와 개입, 부모와의 협력, 사회·정서적 지원, 학습지원 등의 요소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정부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제 공하며, 시간도 반일제에서 종일제로 연장하는 주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8). 또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주정부는 주 내의 교사양성기관에 대해 인가기준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교육과정 점검 및 재학생·졸업생·교사·교장 등을 대상으로 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인가를 한다(Putman & Walsh, 2021).

매년 32만 명 이상의 아동과 그 가족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유치원으로 진학하는데, 유아학교(preschool)와 유치원 사이의 교육적 연계를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헤드스타트 종사자, 유치원 교사, 아동, 학부모 각각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다양한 통로로 제공한다(ECLKC, n.d. c). 한편, 유치원 입학 시에는 아동의 학습준비도 평가(Kindergarten readiness assessment)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학교, 교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급, 학교, 학군 차원의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각 주정부에서는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앨라배마, 미시간, 미시시피, 오레곤, 유타), 주정부의 교육목표 설정 및 진전상황 평가(아이다호, 위

싱턴),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교 확인(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등의 목적으로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Garver, 2020).

라. 특수교육법(IDEA)에 따른 교육현황

1) 기관

IDEA PartB, Section 619는 3~5세 장애유아 대상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각 주정부의 IDEA PartB 담당자로부터 설문조사한 결과(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9)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3~5세 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학군(39개 주, 75%)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주는 3개 주(6%)였다. 3~5세 교사의 장애유아 담당 사례 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 주는 14개 주(28%)였고, 대부분의 주(36개, 72%)는 관련규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규정이 있는 주의 경우,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장애아동의 수와 교사 및 보조교사의 수에 대한 규정이 각기 다르다. 교사 1인당 8~12명의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경우, 학급당 최대 20명의 학생 중 장애아동은 10명까지 가능한 경우, 학급당 최대 30명의 학생에 1명의 특수보조교사(paraprofessional)가 있는 경우 등 주정부마다 다양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9, p. 5).

2) 인력

3~5세 장애유아에게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사자격에 대해서도 주정부(49개 주 응답)마다 규정이 다르다. 주마다 유아특수교육 전공자(34개 주, 69%), 특수교육 전공자(20개 주, 41%), 언어치료 전공자(12개 주, 41%), 기타자격증 소지자(7개 주, 14%) 등이 장애유아를 담당할 수 있다. 장애아 담당 준교사(paraprofessional)의 자격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23개 주, 48%), CDA(5개 주, 10%), 주정부 준교사 자격증(21개 주, 44%), 학군 별로 지정(8개 주, 17%), 기타자격증(11개 주, 23%, 예, 준교사 시험,

매년 12시간 유아교육 훈련 등)이 요구된다(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9).

3) 질 관리

IDEA에 따르면, 각 주정부에서는 주 실행계획서(State Performance Plan, SPP)와 연례 평가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 APR)를 제출해야 한다. APR에는 해당 주정부가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였는지, SPP에 기술한 계획대로 실행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법 준수 및 실행 지표로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실행 결과 및 법의 각 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포함된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각 주정부는 ‘기준 도달’(meets requirements), ‘도움 필요’(needs assistance), ‘개입 필요’(needs intervention), ‘상당한 개입 필요’(needs substantial intervention)의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판정받으며, 그 결과는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기준 도달’ 판정을 받지 못한 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하며, 2년 연속 기준미달인 주정부는 기술지원을 받고, 주정부 자체예산으로 개선노력을 취하도록 하거나, 고위험군 주(state)로 분류하여 추가 요구사항이 더해진다. 3년 연속 기준미달인 주정부는 수정계획 또는 의무이행 각서를 제출하거나 연방정부지원금 동결 제재를 받게 된다. ‘상당한 개입 필요’ 판정을 받은 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이 즉시 동결되거나 해당 사안이 법무부로 이관된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주요이슈 분석

1. ECEC 행정 부서 통합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담당부처가 다르다. 그러나 현재는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유아 관련 데이터 통합, 공동 모니터링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PDG 프로그램 내용이 현재는 교육부와 함께 관리되고 있다. 교육부 관할의 주립유아학교 프로그램은 공립학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관할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체계 면에서는, 주정부의 유아교육관련부서들이 연령과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각 주에서 유아교육담당부서를 일원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재의 정책적 흐름은 다음과 같은 상황적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미 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함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학습 및 치료 프로그램의 중복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d.b).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요구 사항 또한 다양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들 간의 행정 체계 통합을 통해 중복을 방지하는 동시에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질적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둘째,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된 효율적인 조기 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정책적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ipartisan Policy Center, 2018). 이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영유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간주될 때만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유아교육 및 보육(ECEC)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파편화, 관료적 비효율성, 조정 부족으로 인해 ECEC 서비스 접근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아동을 포함하여 많은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는 생애 초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세 미만 아동에게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너무 많은 미국 아동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아교육정책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셋째,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미국 농무부(USDA)는 조기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감독 효율성에 관한 공동 지침 문서를 발표하였다(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d.c). 이 문서의 목적은 자금별 모니터링이 아닌 자금 흐름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조정, 협업, 교차 교육, 차등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및 기술사용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의 현재 초점을 "규정 준수"에서 "지속적인 질 향상"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미국 정부는 가장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최적의 발달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행정부처 간의 연계 통합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 주립 유아학교(State Preschools) 정책의 정착

우리나라는 3~5세 유아의 유치원 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세를 위한 유치원이 K학년의 형태로 공교육 체계에 속하여 교육부의 관리 하에 있는 반면, 그 이전 3~4세(Pre-K)를 위한 교육은 저소득층을 위한 헤드스타트와 민간 보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50개 주 중 44개 이상의 주에서 주정부 지원금으로 유아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미국 정부의 Pre-K에 대한 지원은 수년간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루는 사회적, 정서적, 학문적, 경제적 성공과 관련이 있으며, 투자대비 경제효과가 우수하다(Gillispie, 2021). 보편적인(universal) Pre-K는 인종과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에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보편적인 Pre-K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기금은 예비교사 교육비 지원, 교사 수당 지원을 포함한다(Mattingly & Nobles, 2021). 또한 중위소득의 1.5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이 보육에 가계소득의 7%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 것과,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바이든의 Pre-K 확장 계획은 저소득층 아동 및 유색인종 아동을 위한 사회적 이동성과 형평성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다. 연방 정부에서는 Pre-K의 접근성과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로써, 이미 1990년대부터 각각 주정부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주립 유아학교 정책이 이제 연방정부의 Pre-K 정책방향과 일치하며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국유아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의 연구에 따르면, Pre-K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방정부와의 파

트너십을 통해 주정부와 지방 정부가 2040년까지 3세와 4세 어린이 500만 명에 대한 Pre-K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NIEER, 2021).

주립 유아학교 정책의 확장세는 각 주의 정책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뉴욕주의 경우 Pre-K를 위해 1억 5천만 달러의 재정을 증액하였으며(Yakin, 2021),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소수의 4세 유아들에게만 제공되던 공립학교의 과도기 유치원(Transitional Kindergarten: TK) 프로그램을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다(Jackson, 2021). 이러한 캘리포니아주의 Pre-K 확장계획은 Pre-K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수학과 문해 능력이 더 뛰어나고, Pre-K 교육이 이중언어 학습자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더 나아가 3세아에게도 Pre-K 접근성을 확대할 것과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지원, 교사-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 Pre-K 교사훈련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주의 경우, Pre-K를 확장하는 것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기금 마련을 통해 4세 유아를 위한 양질의 Pre-K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였다(Rhode I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n.d.).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3~4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공립학교 시스템으로 옮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예, 학업성취 및 평가에 대한 강조)가 파생될 것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정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모든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Pre-K라는 흐름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Pre-K 정책과 함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미국도 유아교육과 초등 연계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지만, 최근 정책 결정자들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관계자들이 상호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3~4세까지 공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사와 학교 운영자들에게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교육과 초등을 연계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초등학교 교장들의 전국연합인 NAESP 아카데미에서는 교장과 장학사 등 학교 지도자들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도록 여러 활동을 제공하며, 그 중 온라인 과정을 통한 PreK-3 리더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n.d.).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관리자는 3~8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원활한 학습 연계를 지원할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전국 P-3 센터(National P-3 Center)에서는 아동 학습의 질 향상, 교육의 일관성 유지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유아학교(Pre-K)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을 연계성 있게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Kauerz & Coffmann, 2019). 이를 통해 학령전 아동들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리 초등학교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아동들의 입학 전부터 학교준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접근을 하도록 돕는다. 조기 학습 성과 향상 센터(Center on Enhancing Early Learning Outcomes: CEELo)에 의하면, P-3 전반에 걸친 교육적 접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사회, 주 및 연방 정부가 연대하여 노력하고 있다(Jacobson, 2016).

4.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를 위한 지원은 대부분 모든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했었고, 현재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육아수당이나 아동수당,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교육 체계에 포함된 K학년을 제외하면 철저하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미국에는 모든 가정에 제공되는 육아수당은 없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저소득가정 대상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며,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및 환급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다양한 법을 통해 취약계층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육아발전지원금(CCDBG)법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보육·유아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부담금은 가구소득의 7%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헤드스타트 법(Head Start Act) 또한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학령전(0~5세) 저소득층 아동들과 그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아동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또한, 저소득층 아동 및 위기 아동을 위한 조항(Title I)과 다문화 아동을 위한 조항(Title III)을 가지고,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에서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의 아동, 특수아동, 미국원주민 아동, 방치된 아동, 가족 문해 서비스를 받는 유아와 부모 등의 학습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 법에서는 0~21세의 모든 장애아동이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 및 교육당국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 학군, 주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주체를 소송하기도 한다.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리 및 학교와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해당 법이 존재하고, 법 준수여부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학교당국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하는 영역이 확실히 되는 이러한 법적 체계 속에서, 미국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5. 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 대응책

2020년 세계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The Education Trust—West, n.d.),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의 19%가 실업 혹은 임시휴직 등으로 직장을 잃었고, 직장이 있더라도 3분의 1 이상(37%)의 가족들이 육아·아동 돌봄을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해서 수입이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4명 중 3명(72%)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로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 발달이 저해될까 걱정하고, 4명 중 3명(77%)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이 평소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64%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이전에 있던 보육 준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12%는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하며, 24%는 위기가 끝났을 때 무엇을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닥친 위기는 부모의 보육 준비 및 기타 양육 지원을 크게 변화시켰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가정의 5분의 1 이상(22%)이 가정 또는 센터 기반 보육에 의존했으며 38%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소한 한 명의 부모가 집에 머물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2021년 현재는 보육 프로그램의 7%만이 운영 중이고, 83%는 집에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머

물려야 하는 상황이다. 부모의 63%는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원격 근무와 자녀 돌보기 사이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있다. 부모는 일반적인 지원 시스템과도 단절되어 있다. 부모의 거의 3분의 2(61%)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데 친구와 가족에게 의존하는데, 사회적 거리 제한이 유지되는 동안 이것이 어려워졌다. 조기 헤드스타트와 조기개입 및 가정 방문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경험했으며, 34%는 코로나 사태 동안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서비스체계의 연계 중단은 교육 형평성에도 큰 위기가 된다(The Education Trust—West, n.d.).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기 학습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COVID-19로 인한 학교출입 통제 및 원격수업 방식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도 학생간 격차를 악화시켰고(Dorn, Hancock, Sarakatsannis, & Viruleg, 2020), 학생들의 배경에 따라, 인종별 소득별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 예비교사훈련 및 현직교사 전문성 개발도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유아학교 프로그램에 요구하던 기준들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었고, 교사 훈련 시 현장교육 관련기준, 교사후보자 졸업기준, 임용고시, 교사 연수 기준도 느슨해지거나 기간이 연장되거나 면제되었으며, 유아평가 또한 많은 주에서 중단하였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속되었다.

COVID-19 상황에서 교사, 관리자 및 학부모는 아동의 지속적 학습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교실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등교수업 결여 시 학생의 학업성취는 원격 학습에 대한 접근성, 원격 교육의 품질, 가정의 지원 및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COVID-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원격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이 없는 저소득층 및 시골지역 가정들이 와이파이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통신사들과 연계하였다. 공립학교의 원격교육 자료들은 지역 도서관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립 유아학교의 경우, 원격학습 대안으로 각 가정에서 원격으로 학습자

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거나, 인쇄된 학습자료 꾸러미를 제공하고,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유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Friedman-Krauss et al., 2021). 일부 주에서는 청소도구나 개별 안전장비, 유아 대상 원격학습을 위한 안내, 교실 소독 등을 지원하였다. 일부 주에서는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 주제에 ‘원격수업 운영,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지원, 안전’ 등의 콘텐츠를 추가하였으며, 연수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맺음말

본 서에서는 미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육아 관련법과 정책, 육아지원 정책 현황을 알아보고 주요이슈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 살펴본 주요이슈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육아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이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이다. 미국의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유아발달 및 유아교육 중요성 인식 하에 공동 연구 진행, 공동 보고서 발행, 정부 기구 간 연계 및 통합 권장 등의 노력을 해 왔고,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행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교육기획균등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지난 정부에서 각 분야의 연구를 통해 분야별 통합 방법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두 시스템의 통합 이슈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대신 ‘교사,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영역의 격차 완화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었고, 유보통합 이슈는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만 언급되었다. 그러나 2021년 말 현재, 대선을 앞두고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양한 ECEC 서비스 간의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기관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둘째, 학령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정책의 확장성이다. 미국이 보편적인 Pre-K 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 대상과 재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모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미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3~5세 정책은 미국에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국의 모든 대상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교육, 모든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양질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수차례의 전국 교사연수 등을 통해 교육대상, 교육재정, 교육의 질 제고 등 다각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을 해 왔다. 물론 전국적인 정책 시행이 가능한 한국의 상황과 50개의 주정부에서 각기 다른 교육정책이 시행되어 온 연방국가의 교육체계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정책비교는 불가하다.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의 3~5세 전면 무상교육 정책은 정책담당자들과 관련단체와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가정과 유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나온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계 하에서, 유아교육인력과 보육인력의 처우 및 전문성 향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과제이다. 미국의 Pre-K 지원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의 처우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라는 교육체계 간 정책적 연계성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유치원이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초등 교육에서 유치원 교육의 통합이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경우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를 함께 묶어서 교육과정 운영의 틀을 만들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달체계 담당자들과 학교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

진함으로써 교육의 연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5세 유아학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의 연계에 대한 노력이 정책연구 및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더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는, 연계 교육과정 연구,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지도자 공동연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접근, 각 지역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정책담당자들의 조직적 연계, 지속적인 관련정책 연구 및 보고서 발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접근법과 지원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육아수당, 아동수당,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등의 보편적 지원으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초점은 모든 아동이며, 각 취약계층의 필요에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관련정책이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특수교육법에서는 각 지자체, 학군, 학교, 교사, 및 모든 특수교육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였고, 학부모와 아동의 법적 권리 및 각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권리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법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강제조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자체 및 학군 평가, 교육관계기관 및 관련자의 불이행 부분에 대한 관련 소송이 가능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장애아동 및 가정의 교육권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군과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식 및 사용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다문화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조항도 상술되어 있어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균등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재정비하고 권고조항, 의무조항, 강제조항, 등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여 교육기관과 관계자의 책무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촘촘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한 선제적 정책지원 측면이다. 한국에서는 2020년 COVID-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유치원 개학 연기와 휴원이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EBS 교육방송과 누리과정 포털을 통하여 유치원 원격교육을 지원하였다. 동시에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자료가 개발되기 이전에 유치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과 소통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직접 유아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불만은 커졌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유아들의 기관 이탈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초중등 원격교육을 위한 환경과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유아교육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도 COVID-19 상황에서 많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폐쇄되고 원격교육이나 가정에서의 학습을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졌다. 미국이 특별히 잘 대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원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지원해 주거나 부족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지만 좀 더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더 불어 COVID-19 상황에서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만 하다.

본서에서는 미국의 육아정책 동향분석을 통해 육아정책의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아교육 무상정책의 확장성, 교육체계 간 정책적 연계성,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법적인 책무성, 응급상황에 대한 선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지원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때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수립 시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장령령, 박주현(2019). 미국의 초중등교육법 분석: 문헌정보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357-380.
<http://dx.doi.org/10.16981/kliiss.50.1.201903.357>
(2021. 9. 9. 인출)
- 조은경(2020). 미국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교육정책: 주립 유아학교 프로그램(State pre-K programs)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 연구, 19(3), 59-88.
- 조은경, 김은영(2008). 미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크리스찬저널 (2018. 1. 6.). 미국의 혼외자녀 출산율이 40%에 달해. 크리스찬저널. <http://www.kcjlogos.org/news/articleView.html?idxno=13564> (2021. 7. 20. 인출)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16, September 1). *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HSPPS) final rule*.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docs/policy-pi/ACF-PI-HS-16-04.pdf> (2021. 9. 10. 인출)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0). *Attachment A: Allowable uses of quality improvement funds as specified in the Head Start Act: ACF-PI-HS-20-02 FY 2020 Head Start funding increase*.
<https://eclkc.ohs.acf.hhs.gov/publication/attachment-allowable-uses-quality-improvement-funds-specified-head-start-act> (2021. 9. 25. 인출)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2021. February 19.). FY 2021 Head Start Funding Increase: ACF-PI-HS-21-01.
<https://eclkc.ohs.acf.hhs.gov/policy/pi/acf-pi-hs-21-01> (2021. 9. 25. 인출)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n.d.).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an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Overview*.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https://aspe.hhs.gov/aid-families-dependent-children-afdc-temporary-assistance-needy-families-tanf-overview> (2021. 7. 20. 인출)

Benefits.gov. (n.d.). *Child tax credit*. <https://www.benefits.gov/benefit/938> (2021. 10. 9. 인출)

Bipartisan Policy Center. (2018). Early childhood initiative: Creating an integrated efficient early care and education system to support children and families: A state-by-state analysis. <https://bipartisanpolicy.org/download/?file=/wp-content/uploads/2019/03/Creating-an-Integrated-Efficient-Early-Care-and-Education-System-to-Support-Children-and-Families-A-State-by-State-Analysis.pdf> (2021. 9. 30 인출)

Caswell, L., Bumgarner, E., Barrueco, S., Lopez, M., Wolf, A., & Layzer, C. (2019). *Migrant and seasonal Head Start study 2017: Data Tables*, OPRE Report #2019-66. Washington, DC: Office of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 for Parent Information and Resources. (2021, October). *Parental rights under IDEA*. <https://www.parentcenterhub.org/parental-rights/> (2021. 10. 18. 인출)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21, March 31.). *Policy basics: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 <https://www.cbpp.org/research/family-income-support/temporary-assistance-for-needy-families> (2021. 9. 20. 인출)
- ChildCare.gov (n.d.). *Ratios and group sizes*.
<https://childcare.gov/consumer-education/ratios-and-group-sizes> (2021. 8. 20. 인출)
- Children's Defense Fund. (2021).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 2021*.
<https://www.childrensdefense.org/wp-content/uploads/2021/04/The-State-of-Americas-Children-2021.pdf> (2021. 9. 20. 인출)
- De Brey, C., Snyder, T. D., Zhang, A., & Dillow, S. A. (2021).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2019* (NCES 2021-009), p. 14. <https://nces.ed.gov/pubs2021/2021009.pdf> (2021. 10. 10. 인출)
- Dorn, E., Hancock, B., Sarakatsannis, J., & Viruleg, E. (2020. June 1). *COVID-19 and student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hurt could last a lifetime*. McKinsey and Company.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ublic-and-social-sector/our-insights/covid-19-and-student-learning-in-the-united-states-the-hurt-could-last-a-lifetime> (2021. 9. 30 인출)
-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2020, September 18). *Eligibility: Poverty guidelines and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n Head Start programs*.
<https://eclkc.ohs.acf.hhs.gov/eligibility-ersea/article/poverty-guidelines-determining-eligibility-participation-head-start-programs> (2021. 7. 20. 인출)
-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n.d.a). *A national overview of grantee CLASS® scores in 2020*.

<https://eclkc.ohs.acf.hhs.gov/data-ongoing-monitoring/article/national-overview-grantee-class-scores-2020>
(2021. 9. 25. 인출)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n.d.b). *Data & ongoing monitoring*.

<https://eclkc.ohs.acf.hhs.gov/data-ongoing-monitoring/learning-module/digging-data-responsive-programs>
(2021. 9. 25. 인출)

Early Childhood Learning & Knowledge Center. (n.d.c). *Transition to kindergarten*.

<https://eclkc.ohs.acf.hhs.gov/transitions/article/transition-kindergarten>
(2021. 9. 25. 인출)

Early Childhood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9, July). *IDEA Part B, Section 619 National Survey: Summary report*.
<https://ectacenter.org/~pdfs/sec619/619-survey-2019.pdf>
(2021. 10. 15. 인출)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 (2018). *State kindergarten-through-third-grade policies: Does the state require the district to offer kindergarten and if so, full or half day? What exemptions exist for districts?*
<http://ecs.force.com/mbdata/MBQuest2RTanw?rep=K3Q1805>
(2021. 9. 25. 인출)

Friedman-Krauss, A. H., Barnett, W. S., Garver, K. A., Hodges, K. S., Weisenfeld, G. G., & Gardiner, B. A. (2021). *The State of Preschool 2020: State Preschool Yearbook*. New Brunswick, NJ: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Garver, K. (2020, April 18). *The 'why' behind kindergarten entry assessments*.

<https://nieer.org/policy-issue/the-why-behind-kindergarten-entry-assessments>
(2021. 9. 25. 인출)

Gillispie, C. (2021, April 29). *With the American Families Plan, the U.S. Stands on the Precipice of Universal Pre-K*.
<https://edtrust.org/the-equity-line/with-the-american-families-plan-the-u-s-stands-on-the-precipice-of-universal-pre-k/> (2021. 9. 30 인출)

Graf, N. (2019. November 6.). *Key findings on marriage and cohabitations in the U.S*.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11/06/key-findings-on-marriage-and-cohabitation-in-the-u-s/> (2021. 7. 20. 인출)

Hamilton, B. E., Martin, J. A., & Osterman, M. J. K. (2021, May). *Births: Provisional data for 2020. NVSS vital statistics rapid release, Report no. 012*, 1-11.
<https://www.cdc.gov/nchs/data/vsrr/vsrr012-508.pdf>
(2021. 7. 20. 인출)

Head Start Act. (n.d.). *Sec.645A. Early Head Start Programs*.
<https://eclkc.ohs.acf.hhs.gov/policy/head-start-act/sec-645a-early-head-start-programs> (2021. 7. 20. 인출)

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1302.91.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https://eclkc.ohs.acf.hhs.gov/policy/45-cfr-chap-xiii/1302-92-training-professional-development> (2021. 7. 20. 인출)

Head Start Program Performance Standards 1302.92. *Staff qualifications and competency requirements*.
<https://eclkc.ohs.acf.hhs.gov/policy/45-cfr-chap-xiii/1302-91-staff-qualifications-competency-requirements>
(2021. 7. 20. 인출)

IRS. (2020, December 30). *Tax year 2020 income limits and range of EITC*.

-
- <https://www.etc.irs.gov/etc-central/about-etc/income-limits-and-range-of-etc/income-limits-and-range-of-etc> (2021. 7. 20. 인출)
- IRS. (2021a). *2021년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advance-child-tax-credit-payments-in-2021> (2021. 7. 20. 인출)
- IRS. (2021b).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 적합한 경우*.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individuals/earned-income-tax-credit/who-qualifies-for-the-earned-income-tax-credit-etc> (2021. 7. 20. 인출)
- IRS. (2021c). *Child and dependent care information*.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and-dependent-care-information> (2021. 7. 20. 인출)
- Irwin, V., Zhang, J., Wang, X., Hein, S., Wang, K., Roberts, A., York, C., Barmer, A., Bullock Mann, F., Dilig, R., & Parker, S. (2021). *Report on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21 (NCES 2021-144)*.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pubsearch/pubsinfo.asp?pubid=2021144> (2021. 9. 25. 인출)
- Jackson, S. (2021, June 21). *California moves toward universal Pre-K*. New America.
<https://www.newamerica.org/education-policy/edcentral/california-universal-pre-k/> (2021. 9. 30 인출)
- Jacobson, D. (2016). *Building state p-3 systems: Learning from leading states*.
http://ceelo.org/wp-content/uploads/2016/08/ceelo_pdg_P3systems_AligningEarlyEducFINAL.pdf (2021. 9. 30 인출)

Jensen, E., Jones, N., Rabe, M., Pratt, B., Medina, L., Orozco, K., & Spell, L. (2021. August 12). *2020 U.S. population more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than measured in 2010*.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library/stories/2021/08/2020-united-states-population-more-racially-ethnically-diverse-than-2010.html> (2021. 8. 20. 인출)

Kauerz K., & Coffmann, J. (2019). *Framework for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P-3 approaches*. National P3 Center.
<https://nationalp-3center.org/wp-content/uploads/2019/10/P-3-Framework.pdf> (2021. 9. 30 인출)

KFF. (2020, December 4). *Family and sick leave in the U.S.*
<https://www.kff.org/womens-health-policy/fact-sheet/paid-family-leave-and-sick-days-in-the-u-s/> (2021. 7. 24. 인출)

Leonhardt, M. (2020, January 27). *Parents are spending \$42 billion on early child care – that’s more than federal and state spending combined*. CNBC Make it.
<https://www.cnn.com/2020/01/27/parents-spending-42-billion-on-early-child-care-each-year.html> (2021. 10. 20. 인출)

Livingston, G. (2018, April 25). *The changing profile of unmarried parents: A growing share are living with a partner*.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2018/04/25/the-changing-profile-of-unmarried-parents/> (2021. 8. 20. 인출)

Lynch, K. E. (2016). CCDBG Act of 2014: Key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status. *CRS in focus, IF0416*.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0416> (2021. 9. 20. 인출)

Mattingly, P., & Nobles, R. (2021, April 27). *Biden set to announce \$200 billion for universal pre-K in sweeping new proposal*.
<https://www.cnn.com/2021/04/27/politics/universal-pre-k-200-billion/index.html> (2021. 9. 30 인출)

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n.d.). *Pre-K-3 Leadership Academy*®.
<https://www.naesp.org/programs/professional-learning/pre-k-3-leadership-academy/> (2021. 9. 30 인출)

National Association for Regulatory Administration. (2020). *2017 child care licensing study*.
<https://nara.memberclicks.net/assets/docs/ChildCareLicensingStudies/2017CCStudy/NARA%202017%20Licensing%20Survey%20Report%20FINALrev.pdf> (2021. 9. 20. 인출)

National Center on Early Childhood Quality Assurance. (2020, March). *Trends in child care center licensing requirements and policies for 2017: Research brief 1*. <https://childcareta.acf.hhs.gov/resource/trends-child-care-center-licensing-requirements-and-policies-2017-research-brief-1> (2021. 9. 21. 인출)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19). *Enrollment of 3-, 4-, and 5-year-old children in preprimary programs, by age of child, level of program, control of program, and attendance status: Selected years, 1970 through 2018*.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19/tables/dt19_202.10.asp (2021. 8. 20. 인출)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a). *Table 209.22. Number and percentage distribution of teachers in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by instructional level and selected teacher and school characteristics: 1999-2000, 2015-16, 2017-18.*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20/tables/dt20_209.22.asp (2021. 8. 20. 인출)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20b). *Table 208.10.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pupil/teacher ratios, by selected school characteristics: Selected years, fall 1990 through fall 2018.*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20/tables/dt20_208.10.asp (2021. 8. 20. 인출)

National Clearinghouse fo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n.d.). *Title III state formula grants.*
<https://ncela.ed.gov/title-iii-state-formula-grants>
(2021. 9. 20. 인출)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1a, March 9).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ttps://www.ncsl.org/ncsl-in-dc/publications-and-resources/american-rescue-plan-act-of-2021.aspx>
(2021. 8. 20. 인출)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1b, October 14). *Earned income tax credit overview.*
<https://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earned-income-tax-credits-for-working-families.aspx>
(2021. 10. 19. 인출)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ducation. (n.d.). Educator professional development requirements.
<https://nhdoepm.atlassian.net/wiki/spaces/CHD/pa>

-
- ges/347963471/Educator+Professional+Development
+Requirements (2021. 12. 9. 인출)
-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ies. (2021). *New York State child day care regulations*.
<https://www.ocfs.ny.gov/programs/childcare/regulations/418-1-DCC.pdf> (2021. 10. 10. 인출)
- New York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n.d.). *Child care regulations and policies*.
<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regulations/>
(2021. 10. 10. 인출)
- NIEER. (2021). *NIEER outlines plan to achieve universal preschool in the US*. Brunswick, NJ: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https://nieer.org/press-release/nieer-outlines-plan-to-achieve-universal-preschool-in-the-us> (2021. 10. 10. 인출)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9-en (2021. 10. 20. 인출)
- Office of Child Care. (n.d.). OCC fact sheet.
<https://www.acf.hhs.gov/occ/fact-sheet> (2021. 8. 20. 인출)
- 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d.a). *Preschool Development Grant Birth through Five (PDG B-5)*.
<https://www.acf.hhs.gov/eod/early-learning/preschool-development-grants> (2021. 10. 15. 인출)
- 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d.b).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oint Interdepartmental Review of All Early Learning Programs for Children Less Than 6 Years of Age*.

-
- <https://www.acf.hhs.gov/ecd/gao-report> (2021. 9. 30 인출)
- Offi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d.c). *Joint Monitoring Guidance Document*.
<https://www.acf.hhs.gov/ecd/joint-monitoring>
(2021. 9. 30 인출)
- 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2021, January 4).
Profile of English learners in the United States.
https://ncela.ed.gov/sites/default/files/fast_facts/DEL4.4_ELProfile_508_1.4.2021_OELA.pdf (2021. 10. 15. 인출)
- Office of Family Assistance. (2018, January 25.). *TANF 12th report to congress*.
<https://www.acf.hhs.gov/ofa/report/tanf-12th-report-congress> (2021. 8. 20. 인출)
- Office of Family Assistance. (2021). *State TANF data and reports*.
<https://www.acf.hhs.gov/ofa/programs/tanf/data-reports> (2021. 10. 5. 인출)
- Office of Head Start. (2019). *Services snapshot: National all programs (2018-2019)*.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no-search/service-snapshot-all-programs-2018-2019.pdf> (2021. 9. 9. 인출)
- Office of Head Start. (n.d.). *History of Head Start*.
<https://www.acf.hhs.gov/ohs/about/history-head-start>
(2021. 9. 9. 인출)
- PRB. (2021). *2021 World population data sheet: Northern America*.
<https://interactives.prb.org/2021-wpds/wp-content/uploads/2021/08/2021-world-population-data-sheet-northern-america.pdf> (2021. 8. 20. 인출)

Public Law 110-134. Improving Head Start for School Readiness Act of 2007.

<https://eclkc.ohs.acf.hhs.gov/sites/default/files/pdf/hs-act-pl-110-134.pdf> (2021. 8. 20. 인출)

Public Law 114-95. *Every Student Succeeds Act*.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2021. 9. 20. 인출)

Putman, H., & Walsh, K. (2021). *State of the States 2021: Teacher preparation policy*.

<https://www.nctq.org/dmsView/PrintReadyStateoftheStates2021TeacherPreparationPolicy> (2021. 9. 25. 인출)

Quality Compendium. (n.d.). *Top trends*.

<https://qualitycompendium.org/top-ten/top-ten-questions-about-qris> (2021. 9. 25. 인출)

Reinicke, C. (2021, June 15). *Monthly child tax credit payments start July 15. Here's what parents need to know*.

<https://www.cnbc.com/2021/06/15/what-to-know-as-monthly-child-tax-credit-payments-start-on-july-15-.html> (2021. 8. 24. 인출)

Rhode I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n.d.). *RI Pre-Kindergarten Programs*.

<https://www.ride.ri.gov/instructionassessment/earlychildhoodeducation/RIPRE-K.aspx> (2021. 9. 30 인출)

Shrider, E. A., Kollar, M., Chen, F., & Semega, J. (2021).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20*. (Report No. P60-273).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content/dam/Census/library/publications/2021/demo/p60-273.pdf> (2021. 9. 20. 인출)

Skinner, R. R. (2020).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as amended by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A primer. CRS Report, R45977.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977>
(2021. 9. 20. 인출)

Snyder, T. D., Dinkes, R., Sonnenberg, W., & Cornman, S. (2019). *Study of the Title I, Part A Grant program mathematical formulas: Statistical analysis report*.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pubs2019/2019016.pdf> (2021. 10. 9. 인출)

Sonnenberg, W. (2016). *Allocating grants for Title I*.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https://nces.ed.gov/surveys/annualreports/pdf/titlei20160111.pdf> (2021. 9. 22. 인출)

Statista. (n.d.a). *Age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2010 to 2020* [chart].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70000/age-distribution-in-the-united-states/> (2021. 8. 20. 인출)

Statista. (n.d.b).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family in the United States from 1960 to 2020* [chart].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3657/average-size-of-a-family-in-the-us/> (2021. 8. 20. 인출)

Statista. (n.d.c). *Kindergarten and child care statistics & facts*. Statista.
<https://www.statista.com/topics/1734/kindergarten-and-child-care/> (2021. 10. 20. 인출)

Statista. (n.d.d). *Number of households in the U.S. from 1960-2020* [chart].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83635/number-of-households-in-the-us/> (2021. 8. 20. 인출)

-
- Statista. (n.d.e). *Percentage of preschool enrollment in the United States in 2020, by age group and type of program* [chart]. Statista.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315074/percentage-of-pre-school-enrollment-in-the-us-by-age-and-type/> (2021. 10. 20. 인출)
- Tax Policy Center. (2021, March 19.). *EITC Parameters: 1975-2021*.
<https://www.taxpolicycenter.org/statistics/eitc-parameters> (2021. 9. 20. 인출)
- The Education Trust—West. (n.d.). *California parent poll: COVID-19 and early childhood*.
<https://west.edtrust.org/california-parent-poll-covid-19-and-early-childhood/> (2021. 9. 30 인출)
- The White House. (2021, April 28). *Fact sheet: The American Families Plan*.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the-american-families-plan/> (2021. 8. 20. 인출)
- The World Bank. (n.d.). *GDP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 (2021. 10. 20. 인출)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a, April 21).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families-2020* [Press release].
<https://www.bls.gov/news.release/pdf/famee.pdf> (2021. 7. 20. 인출)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b, September 3). *The employment situation-August 2021* [Press release].
<https://www.bls.gov/news.release/pdf/empsit.pdf> (2021. 9. 20. 인출)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c, September 8). *Civilian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age, sex, race, and ethnicity*.

<https://www.bls.gov/emp/tables/civilian-labor-force-participation-rate.htm> (2021. 9. 24. 인출)

U.S. Census Bureau. (n.d.). *U.S. and world population clock*.

<https://www.census.gov/popclock/> (2021. 9. 20. 인출)

U.S. Congress. (2015). *Public Law 114-95 - Every Student Succeeds Act*.

<https://www.congress.gov/114/plaws/publ95/PLAW-114publ95.pdf> (2021. 9. 20. 인출)

U.S. Congress. (2021). *H. R. 1319 -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https://www.congress.gov/117/bills/hr1319/BILLS-117hr1319enr.pdf> (2021. 9. 20.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October 20).

Non-regulatory guidance early learning in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Expanding opportunities to support our youngest learners.

<https://www2.ed.gov/policy/elsec/leg/essa/essaelguidance10202016.pdf> (2021. 10. 1.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7, January 18). *Transitioning to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https://www2.ed.gov/policy/elsec/leg/essa/essatransitionfaqs11817.pdf> (2021. 9. 20.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February). *Title I allocation formulas*.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ese/oss/technicalassistance/titleiallocationformulastitleiconfppt22018.pdf> (2021. 9. 20. 인출)

-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A guide to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https://www2.ed.gov/parents/needs/speced/iepguide/index.html#process> (2021. 10. 18. 인출).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1, June 24). *2021 Determination letters on state implementation of IDEA*.
<https://sites.ed.gov/idea/files/ideafactsheet-determinations-2021.pdf> (2021. 10. 17. 인출)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d.a).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https://www.ed.gov/essa?src=rn> (2021. 9. 20. 인출)
- U.S. Department of Education. (n.d.b). *About IDEA*.
<https://sites.ed.gov/idea/about-idea/#IDEA-Purpose> (2021. 10. 10. 인출).
- U.S. Department of Labor. (n.d.c). *Fact sheet #28: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legacy/files/whdfs28.pdf> (2021. 7. 20. 인출)
-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n.d.a). *Full-time, part-time employment: percent distribution of workers employed full-time and part-time by sex*.
<https://www.dol.gov/agencies/wb/data/latest-annual-data/full-and-part-time-employment> (2021. 9. 20. 인출)
-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n.d.b).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mothers and fathers by age of youngest child*.
<https://www.dol.gov/agencies/wb/data/latest-annual-data/labor-force-participation-rates#Labor-Force-Participation-Rate-by-Age-and-Sex> (2021. 7. 20. 인출)
-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n.d.c). *Working*

women: Labor force by sex, race, and Hispanic ethnicity.
<https://www.dol.gov/agencies/wb/data/latest-annual-data/working-women#Percent-Distribution-of-the-Female-Labor-Force-by-Age-Race-and-Hispanic-Ethnicity> (2021. 9. 20. 인출)

U.S.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2021, February 1). *Annual update of the HHS poverty guideline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2/01/2021-01969/annual-update-of-the-hhs-poverty-guidelines> (2021. 10. 18. 인출)

Williams, W. (2021, April 28).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FML) by State*.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paid-family-and-medical-leave-by-state-5089907> (2021. 8. 24. 인출)

Yakin, H. (2021, April 21). *State budget funds big expansion of universal pre-K*.
<https://www.recordonline.com/story/news/2021/04/21/big-expansion-universal-pre-k-ny-state-budget/7290748002/> (2021. 9. 30. 인출)

Zigler, E., Styfco, S. J., & Gilman, E. (1993). The national Head Start program for disadvantaged preschoolers. In E. Zigler & S. J. Styfco (Eds.), *Head Start and beyond: A national plan for extended childhood intervention* (pp. 1-41). Yale University Press.

조은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석사)

컬럼비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학 전공 (석·박사)

전.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현. 뉴햄프셔대학교 교수

김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석·박사)

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27

미국의 육아정책(II)

발 행 인 • 박상희

발 행 처 • 육아정책연구소

저 자 • 조은경·김은영

발 행 일 • 2021년 12월

주 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http://www.kicce.re.kr>

대 표 전 화 • 02) 398-7700

팩 스 • 02) 398-7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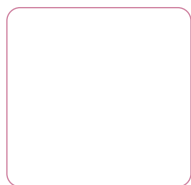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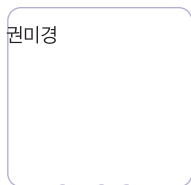
인 쇄 •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ISBN 979-11-90485-88-3(93330)

정가: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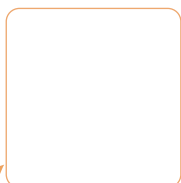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 제 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 (2006) | 유희정
- 제 2권 스웨덴의 육아정책 (2006) | 문무경
- 제 3권 호주의 보육정책 (2007) | 서문희
- 제 4권 영국의 육아정책 (2007) | 문무경
- 제 5권 미국의 육아정책 (2008) | 조은경 · 김은영
- 제 6권 캐나다의 육아지원정책 (2008) | 신나리 · 조혜주
- 제 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 (2009) | 이윤진 · 송신영
- 제 8권 프랑스의 육아정책 (2009) | 정미라 · 조희연 · 안재진
- 제 9권 뉴질랜드의 육아정책 (2010) | 김은설 · 김문정
- 제10권 독일의 육아정책 (2010) | 이명환 · 박수연
- 제11권 일본의 보육정책 동향(II) (2011) | 유해미 · 유희정 · 장경희
- 제12권 대만의 보육정책 (2011) | 이정림 · 邱志鵬
- 제13권 호주의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3) | 서문희 · 이혜민
- 제14권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2013) | 이정원 · 이세원
- 제15권 스웨덴의 육아정책(II) (2015) | 최윤경 · 김윤환 · 이혜민
- 제16권 아일랜드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 (2015) | 최은영 · 장혜진 · 송신영
- 제17권 핀란드의 육아정책(II) (2015) | 이윤진 · 정도상
- 제18권 이스라엘의 육아정책 (2016) | 권미경 · 이강근
- 제19권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2016) | 강은진
- 제20권 덴마크 보육 · 유아교육 정책 동향 (2017) | 양미선
- 제21권 이탈리아의 육아정책 (2017) | 도남희
- 제22권 중국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 (2018) | 이윤진 · 백미하
- 제23권 독일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2018) | 이윤진 · 정재훈
- 제24권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2019) | 장경희 · 유해미
- 제25권 영국의 육아정책(II) (2019) | 문무경
- 제26권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II) (2020) | 이정원 · 권미경



Child Care

Education



Polic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398-7700 Fax. 02-398-7798



9 791190 485883
ISBN 979-11-90485-88-3